2025회계연도 부산광역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 결 산 검 사 의 견 서

2026. 5. 20.

부산광역시 결산검사위원

# 목 차


Ⅰ. 결산검사 의견서 ---------- 1

Ⅱ. 결산검사 결과 요약 ---------- 3

1. 세입·세출결산 ---------- 3
2. 기금의 결산 ---------- 5
3. 재무제표 ---------- 6
4. 채권·채무결산 ---------- 6
5. 재산의 결산 ---------- 7
6. 금고의 결산 ---------- 8
7. 성과보고서 ---------- 9
8. 성인지 결산 ---------- 9

Ⅲ. 개선 및 권고사항 ---------- 10

1. 일반회계에 관한 사항 ---------- 10
2. 기타특별회계에 관한 사항 ---------- 46
3. 기금에 관한 사항 ---------- 56
4. 재무제표에 관한 사항 ---------- 58
5. 성과보고서에 관한 사항 ---------- 62
6. 공유재산에 관한 사항 ---------- 63
7. 성인지 결산에 관한 사항 ---------- 65

# 2025회계연도 부산광역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 Ⅰ. 결산검사 의견서

부산광역시장 귀하

우리 위원들은「지방자치법 시행령」제83조의 규정에 따라 부산광역시 의회로부터 부산광역시의 2025회계연도 결산서 및 첨부서류에 대해 결산검사 위원으로 위촉받아 **2026년 5월 6일부터 2026년 5월 20일까지(15일간) 「지방자치법 시행령」제84조에 규정된 사항에 대하여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우리의 결산검사는 **2025회계연도 부산광역시의 결산서 및 첨부서류가 「지방회계법」등 관계법령과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세부지침 및 지방자치단체 결산 지침의 준수 여부를 검사하고, 부산광역시 재정규모의 적정성과 재정의 효율적인 운영 여부에 대한 재무 관련 회계검사**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들은 검사를 실시함에 있어 세입·세출 결산서 및 첨부서류가 적정한지 여부에 대하여 회계별 세입·세출 결산서와 장부 및 증거서류, 금고의 출납 등 3자가 부합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재무제표, 성과보고서, 결산서 첨부서류도 함께 확인하여 일부 세부 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출서류 조사 및 담당자 면담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본 검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공기업특별회계는 「부산광역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7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결산검사 대상에서 제외하였으며,「지방공기업법」제35조의 규정에 의한 공인회계사의 회계 감사로 갈음하였습니다.

우리 위원들의 의견으로는 부산광역시가 작성하여 제출한 2025회계연도 결산서 및 첨부서류를 검사한 결과, 첨부한 개선 및 권고사항을 제외하고는 세입·세출 결산(계속비·명시이월비 및 사고이월비 포함), 재무제표, 성과보고서, 채권 및 채무의 결산, 기금·공유재산·물품의 결산, 금고의 결산 내용을 「지방회계법」 등 관련 제 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습니다.

2026년 5월 20일

부산광역시 결산 검사 위원

| | |
|---|---|
| 대표위원 | 조 상 진 |
| 위원 | 박 진 수 |
| 위원 | 성 현 달 |
| 위원 | 이 경 빈 |
| 위원 | 김 성 진 |
| 위원 | 박 재 민 |
| 위원 | 정 재 헌 |
| 위원 | 나 준 기 |
| 위원 | 권 수 진 |
| 위원 | 남 미 선 |
| 위원 | 김 봉 수 |
| 위원 | 한 승 훈 |

# Ⅱ. 결산검사 결과 요약

## 1. 세입·세출 결산

### 가. 세입·세출결산 총괄

2025회계연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결산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회 계 별 | 예산현액 | 세입결산액 | 세출결산액 | 다음연도 이 월 액 | 보 조 금 실제반납금 | 순 세 계 잉 여 금 |
|---|---|---|---|---|---|---|
| 계 | 19,484,072 | 19,579,749 | 18,724,363 | 487,389 (27,958) | 14,708 | 353,289 |
| 일반회계 | 15,619,337 | 15,700,790 | 15,087,173 | 328,832 (27,958) | 14,537 | 270,248 |
| 공 기 업 특별회계 | 1,033,385 | 1,007,604 | 855,862 | 123,493 | | 28,249 |
| 기 타 특별회계 | 2,831,350 | 2,871,355 | 2,781,328 | 35,064 | 171 | 54,792 |

※ 자금없는 이월액은 다음연도 이월액에 포함하지 아니하고 ( )로 별도 표시

※ 구성항목별 합계 및 차감금액은 소수점 이하 단수 조정으로 상이할 수 있음.

※ ('26.1.지방자치단체 결산 통합기준 개정, 추가) **지정재원잉여금** : '25간주예산편성으로 **우리시는 0원임**

### 나. 세입결산

2025회계연도 회계별 세입결산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 회 계 별 | 예산현액 | 징수결정액 | 환급액 | 실제수납액 | 정리보류액 | 미수납액 |
|---|---|---|---|---|---|---|
| 계 | 19,484,072 | 20,034,662 | 782,179 (3.9) | 19,579,749 (97.7) | 43,762 (0.2) | 411,151 (2.1) |
| 일반회계 | 15,619,337 | 16,074,195 | 777,896 (4.8) | 15,700,790 (97.7) | 43,220 (0.3) | 330,185 (2.0) |
| 공 기 업 특별회계 | 1,033,385 | 1,020,409 | 1,759 (0.2) | 1,007,604 (98.7) | 232 (0.0) | 12,573 (1.3) |
| 기 타 특별회계 | 2,831,350 | 2,940,058 | 2,524 (0.1) | 2,871,355 (97.7) | 310 (0.0) | 68,393 (2.3) |

※ ( )는 징수결정액에 대한 비율

## 다. 세출결산

**2025회계연도 회계별 세출결산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 회 계 별 | 예 산 액 | 예산현액 | 지 출 액 | 다음연도 이 월 액 | 보조금 반납금 | 집행잔액 |
|---|---|---|---|---|---|---|
| 계 | 19,058,873 | 19,484,072 | 18,724,363 (96.1) | 515,347 (2.6) | 14,703 (5) | 229,659 (1.2) |
| 일반회계 | 15,317,726 | 15,619,337 | 15,087,173 (96.6) | 356,790 (2.3) | 14,532 (5) | 160,842 (1.0) |
| 공 기 업 특별회계 | 917,172 | 1,033,385 | 855,862 (82.8) | 123,493 (12.0) | | 54,030 (5.2) |
| 기 타 특별회계 | 2,823,975 | 2,831,350 | 2,781,328 (98.2) | 35,064 (1.2) | 171 | 14,787 (0.5) |

※ ( )는 예산현액에 대한 비율이며, 보조금반납금( )는 교부차액임.

## 라. 결산상 세입·세출 처리현황

**2025회계연도 회계별 세입·세출 처리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회 계 별 | 세입결산액 | 세출결산액 | 결산상 잉여금 | 결산상 잉여금 | | |
|---|---|---|---|---|---|---|
| | | | | 다음연도 이 월 액 | 보 조 금 실제반납금 | 순 세 계 잉 여 금 |
| 계 | 19,579,749 | 18,724,363 | 855,386 | 487,389 (27,958) | 14,708 | 353,289 |
| 일반회계 | 15,700,790 | 15,087,173 | 613,617 | 328,832 (27,958) | 14,537 | 270,248 |
| 공 기 업 특별회계 | 1,007,604 | 855,862 | 151,742 | 123,493 | | 28,249 |
| 기 타 특별회계 | 2,871,355 | 2,781,328 | 90,027 | 35,064 | 171 | 54,792 |

※ 자금 없는 이월액은 다음연도 이월액에 포함하지 아니하고 ( )로 별도 표시

## 2. 기금의 결산

2025회계연도 기금결산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연번 | 구분 / 기금별 | 전년도말 조성액 (A) | 당해연도증감액 | | | 당해연도말 조성액 (E)=(A+B) |
|---|---|---|---|---|---|---|
| | | | 계(B=C-D) | 조성액(C) | 사용액(D) | |
| 합계 | | 963,214 | △73,751 | 1,124,019 | 1,197,770 | 889,463 |
| 1 | 통합재정안정화기금* | 77,668 | △19,334 | 671,529 | 690,863 | 58,334 |
| 2 | 대학및지역인재육성기금 | 707 | △292 | 1,299 | 1,591 | 415 |
| 3 | 집단에너지시설기금 | 2,973 | 4,107 | 34,134 | 30,027 | 7,080 |
| 4 | 중소기업육성기금* | 112,650 | △15,670 | 55,322 | 70,992 | 96,980 |
| 5 | 투자진흥기금 | 121,787 | △7,015 | 34,110 | 41,125 | 114,772 |
| 6 | 남북교류협력기금 | 10,331 | 275 | 275 | - | 10,606 |
| 7 | 자활기금 | 10,826 | 452 | 1,248 | 796 | 11,278 |
| 8 | 재해구호기금 | 39,566 | 58 | 26,229 | 26,171 | 39,624 |
| 9 | 식품진흥기금 | 14,504 | △538 | 1,548 | 2,086 | 13,966 |
| 10 | 기후대응기금 | 20,310 | 1,694 | 6,169 | 4,475 | 22,004 |
| 11 | 폐기물처리시설주변지역주민지원기금 | 1,532 | △105 | 4,920 | 5,025 | 1,427 |
| 12 | 재난관리기금 | 56,611 | 10,469 | 56,333 | 45,864 | 67,080 |
| 13 | 도시및주거환경정비기금 | 204,072 | 1,555 | 13,047 | 11,492 | 205,627 |
| 14 | 양성평등.출산지원 및 청소년육성기금* | 58,328 | △8,895 | 2,448 | 11,343 | 49,433 |
| 15 | 문화진흥기금* | 48,610 | △21,175 | 40,770 | 61,945 | 27,435 |
| 16 | 체육진흥기금* | 122,627 | △20,649 | 55,858 | 76,507 | 101,978 |
| 17 | 지역개발기금 | 28,366 | △977 | 110,852 | 111,829 | 27,389 |
| 18 | 관광마이스육성진흥기금 | 6,133 | 3,157 | 3,157 | - | 9,290 |
| 19 | 고향사랑기금 | 613 | 3,590 | 4,228 | 638 | 4,203 |
| 20 | 공공시설등설치운영기금 | 25,000 | △4,458 | 543 | 5,001 | 20,542 |

## 3. 재무제표

(단위 : 백만원)

| 구분 | 재정상태 | | | 재정운영 | | |
|---|---|---|---|---|---|---|
| | 총자산(A) | 총부채(B) | 순자산 (A-B) | 총비용(C) | 총수익(D) | 재정운영결과 (C-D) |
| 2025년 | 50,586,303 | 5,514,202 | 45,072,101 | 16,382,348 | 16,355,384 | 26,964 |
| 2024년 | 50,109,652 | 5,429,130 | 44,680,522 | 14,449,853 | 14,565,104 | △115,251 |
| 증감 | 476,651 | 85,072 | 391,579 | 1,932,495 | 1,790,280 | 142,215 |

## 4. 채권·채무결산

### 가. 채권

2025회계연도 채권 회계별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회계별 \ 구분 | | 전년도말 현재액 | 당해연도 발생액 | 당해연도 소멸액 | 당해연도말 현재액* | | |
|---|---|---|---|---|---|---|---|
| | | | | | 계 | 이행기한 도래액 | 이행기한 미도래액 |
| 합계 | | 94,628 | 22,808 | 21,098 | 96,338 | 3,805 | 92,533 |
| 일반회계 | | 39,416 | 920 | 586 | 39,750 | 3,590 | 36,160 |
| 특별회계 | 소계 | 18 | 22 | 2 | 38 | | 38 |
| | 공기업특별회계 | 18 | | 2 | 16 | | 16 |
| | 기타특별회계 | | 22 | | 22 | | 22 |
| 기금 | 소계 | 55,194 | 21,866 | 20,510 | 56,550 | 215 | 56,335 |
| | 중소기업육성 | 52,300 | 20,753 | 19,108 | 53,945 | | 53,945 |
| | 자활 | 680 | 260 | 60 | 880 | 210 | 670 |
| | 식품진흥 | 2,214 | 853 | 1,342 | 1,725 | 5 | 1,720 |

* 당해연도말 현재액 = 전년도말 현재액 + 당해연도 발생액 - 당해연도 소멸액

### 나. 채무

2025회계연도 채무 종류별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 전년도말 현재액(A) | 당해연도증감액(B) | | | 조정액 (C) | 당해연도말 현재액(D) |
|---|---|---|---|---|---|---|
| | | 계 | 발생액 | 소멸액 | | |
| 합 계 | 3,141,306 | 219,494 | 737,739 | 518,245 | | 3,360,800 |
| 지방채증권 | 2,021,782 | 194,339 | 635,539 | 441,200 | | 2,216,121 |
| 차 입 금 | 1,119,524 | 25,155 | 102,200 | 77,045 | | 1,144,679 |
| 채무부담행위 | | | | | | |

* 당해연도말 현재액(D) = 전년도말 현재액(A) + 당해연도 증감액(B) + 조정액(C)

## 5. 재산의 결산

### 가. 공유재산

2025회계연도 말 현재 공유재산의 용도별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용 도 별 | | 전년도말 현재액 | 당해연도 증감액 | | | 당해연도말 현재액 |
|---|---|---|---|---|---|---|
| | | | 계 | 증가액 | 감소액 | |
| 합 계 | | 33,898,822 | 689,905 | 1,262,738 | 572,833 | 34,588,727 |
| 행정재산 | 소 계 | 30,451,173 | 603,363 | 705,666 | 102,303 | 31,054,536 |
| | 공용재산 | 11,608,731 | 400,812 | 412,069 | 11,257 | 12,009,543 |
| | 공공용재산 | 17,789,741 | 194,908 | 278,721 | 83,813 | 17,984,649 |
| | 기업용재산 | 980,080 | 7,643 | 14,876 | 7,233 | 987,723 |
| | 보존용재산 | 72,621 | 0 | 0 | 0 | 72,621 |
| 일반재산 | | 576,531 | △14,745 | 21,030 | 35,775 | 561,786 |
| 건설중인재산 | | 2,871,118 | 101,287 | 536,042 | 434,755 | 2,972,405 |

### 나. 물품

2025회계연도 말 현재 물품의 취득·처분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점, 백만원)

| 구분 | 전년도말 현재액 | | 당해연도증감 | | | | | | 당해연도말 보유액 | |
|---|---|---|---|---|---|---|---|---|---|---|
| | 수량 | 금액 | 취득 | | 처분 | | 계 | | 수량 | 금액 |
| | | | 수량 | 금액 | 수량 | 금액 | 수량 | 금액 | | |
| 계 | 5,073 | 143,527 | 686 | 10,017 | △138 | △4,494 | 548 | 5,523 | 5,621 | 149,050 |

※ 작성대상 물품 : 58종 정수물품(49종 정수물품 보유)

※ 미보유 정수물품 : 조연차, 살수차, 저속전기자동차, 가드레일청소차, 제설차, 칼슘살포차, 조명차, 도로보수차, 분무기탑재차 9종

## 6. 금고의 결산

2025회계연도 금고의 결산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분 | 전년도말 현재액 | 당해연도증감액 | | | 당해연도말 현재액 |
|---|---|---|---|---|---|
| | | 계 (1)-(2) | 수입액(1) | 지출액(2) | |
| 합계(A+B+C) | 1,947,707 | 781,635 | 20,703,768 | 19,922,133 | 1,744,849 |
| 일반회계소계(A) | 766,003 | 613,617 | 15,700,790 | 15,087,173 | 613,617 |
| 특별회계소계(B) | 218,490 | 241,769 | 3,878,959 | 3,637,190 | 241,769 |
| 공기업 | 183,442 | 151,742 | 1,007,604 | 855,862 | 151,742 |
| 기타 | 35,048 | 90,027 | 2,871,355 | 2,781,328 | 90,027 |
| 기금소계(C) | 963,214 | △73,751 | 1,124,019 | 1,197,770 | 889,463 |

## 7. 성과보고서

2025회계연도 성과보고서 총괄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개, 백만원)

| 성 과 목 표 | | | | | | 결 산 액 | | |
|---|---|---|---|---|---|---|---|---|
| 전 략 목표수 | 정책사업목표 | | 성과달성도 | | | 현 년 도 결 산 액 | 전 년 도 결 산 액 | 비교증감 |
| | 개수 | 지표수 | 초과달성 | 달성 | 미달성 | | | |
| 35 | 258 | 480 | 49 | 407 | 24 | 17,868,501 | 16,169,075 | 1,699,426 |

※ '초과달성'이란 목표대비 130% 이상 달성, '달성'이란 100% 이상 130% 미만 달성, '미달성'이란 100% 미만의 달성도를 보인 경우로 구분

## 8. 성인지 결산

2025회계연도 성인지 대상 사업 회계별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 사업개수(개) | 예 산 현 액 | 지 출 액 | 집행률(%) |
|---|---|---|---|---|
| 계 | 210 | 866,067 | 838,626 | 96.8 |
| 일 반 회 계 | 205 | 846,726 | 823,980 | 97.3 |
| 기타특별회계 | 2 | 6,384 | 3,513 | 55.0 |
| 기 금 | 3 | 12,957 | 11,133 | 85.9 |

# Ⅲ. 개선 및 권고사항

## 1. 일반회계에 관한 사항

### 가. 세입결산에 관한 사항

#### 1) 미수납액에 관한 사항

##### 가) 현황 및 문제점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징수결정액 대비 미수납액 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 구 분 | | 2025년 | | | 2024년 | | | 2023년 | | |
|---|---|---|---|---|---|---|---|---|---|---|
| | | 징수결정액 | 미수납액 | 비율 | 징수결정액 | 미수납액 | 비율 | 징수결정액 | 미수납액 | 비율 |
| 지방세 | | 5,554,619 | 180,305 | 3.25 | 5,545,126 | 177,587 | 3.20 | 5,448,759 | 163,473 | 3.00 |
| | 보통세 | 4,821,560 | 69,621 | 1.44 | 4,812,102 | 67,223 | 1.40 | 4,767,283 | 64,058 | 1.30 |
| | 목적세 | 544,234 | 14,230 | 2.61 | 560,837 | 14,457 | 2.58 | 560,652 | 14,515 | 2.60 |
| | 지난년도 수입 | 188,825 | 96,454 | 51.08 | 172,187 | 95,907 | 55.70 | 120,824 | 84,900 | 70.30 |
| 세외수입 | | 579,951 | 149,880 | 25.84 | 627,618 | 137,772 | 21.95 | 444,556 | 38,963 | 8.76 |
| 경상적세외수입 | 재산임대 수입 | 29,625 | 74 | 0.25 | 17,151 | 1,416 | 8.26 | 16,080 | 2,439 | 15.20 |
| | 사용료 수입 | 63,827 | 1,343 | 2.10 | 52,019 | 2,416 | 4.64 | 51,775 | 1,869 | 3.60 |
| | 수수료 수입 | 10,721 | 294 | 2.74 | 24,463 | 577 | 2.36 | 24,106 | 548 | 2.30 |
| | 사업수입 | 48,286 | 531 | 1.10 | 28,998 | 21 | 0.07 | 17,790 | 15 | 0.10 |
| | 징수교부금 수입 | 474 | 73 | 15.40 | 3,332 | - | 0.00 | 4,078 | - | 0.00 |
| | 이자수입 | 29,631 | 1,818 | 6.14 | 24,826 | 102 | 0.41 | 18,560 | 116 | 0.60 |

| 구 분 | | 2025년 | | | 2024년 | | | 2023년 | | |
|---|---|---|---|---|---|---|---|---|---|---|
| | | 징 수 결정액 | 미 수 납 액 | 비 율 | 징 수 결정액 | 미 수 납 액 | 비 율 | 징 수 결정액 | 미 수 납 액 | 비율 |
| 임시적세외수입 | 재산매각 수 입 | 83,834 | 12,719 | 15.17 | 261,070 | 101,820 | 39.0 | 89,572 | - | 0.00 |
| | 자치단체 간부담금 | 11,342 | 3 | 0.03 | 3,619 | 7 | 0.19 | 3,144 | 10 | 0.30 |
| | 보 조 금 반환수입 | 74,150 | 753 | 1.02 | 71,949 | 1,276 | 1.77 | 79,306 | 6,021 | 7.60 |
| | 기타수입 | 87,999 | 850 | 0.97 | 247 | 47 | 19.03 | 102,214 | 2,482 | 2.40 |
| 지방행정제재·부과금등 | 과 징 금 | 116 | 1 | 0.86 | 401 | 282 | 70.32 | 282 | 2 | 0.70 |
| | 이 행 강 제 금 | 608 | 347 | 57.07 | 247 | 47 | 19.03 | 648 | 296 | 45.70 |
| | 변 상 금 | 3,799 | 1,833 | 48.25 | 4,628 | 1,806 | 39.02 | 14,660 | 11,419 | 77.90 |
| | 과 태 료 | 1,533 | 635 | 41.42 | 1,587 | 637 | 40.14 | 1,859 | 846 | 45.50 |
| | 환 수 금 | 307 | 124 | 40.39 | 181 | 47 | 25.97 | 52 | 10 | 19.20 |
| | 부 담 금 | 33 | 33 | 100.0 | 17 | 16 | 94.12 | - | - | - |
| | 범칙금 | 68 | 12 | 17.65 | 61 | 12 | 19.6 | 67 | 17 | 25.40 |
| 지난년도 수입 | | 133,598 | 128,437 | 96.14 | 36,344 | 26,578 | 73.13 | 20,363 | 12,873 | 63.2 |

2025회계연도 지방세 미수납액은 2024회계연도 미수납액 대비 2,718백만원(1.53%) 증가하였으며, 세외수입 미수납액은 12,108백만원(8.79%) 증가하여 총 미수납액 증가액은 14,826백만원(4.70%)입니다. 징수결정액 대비 미수납액 비율은 5.38%가량으로 전년도 5.11%대비 0.27%가량 상승하였습니다.

세외수입 미수납액의 주요 요인은 양자컴퓨터 관련 거점공간 조성사업을 위해 해운대구 센텀시티에 소재한 공유재산부지 매각 잔여대금입니다. 구체적으로 외국인투자기업에 189,408백만원에 매각하였고 일부분납에 따른 분납이자 등을 포함한 잔여대금인 101,523백만원이 재산매각수입의 미수납액으로 처리되었고 세외수입 미수납 금액의 67.7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최근 3개년의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징수결정액 대비 미수납 비율의 추이를 살펴보면 지방세 미수납액의 각각 2023년 163,473백만원(미수납율 3.00%), 2024년 177,587백만원(미수납율 3.20%), 2025년 180,305백만원(미수납율 3.25%)로 꾸준히 상승하고 있으며 세외수입의 경우 또한, 2023년 38,963백만원(미수납율 8.76%), 2024년 137,772백만원(미수납율 21.95%), 2025년 149,880백만원(미수납율 25.84%)으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지난년도 수입의 미수납액이 누적적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으므로 미수납액의 징수율 제고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지방세 관련하여, 최근 3개년의 부산시 및 구군별 지방세 미수납액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 | 2025년 | 2024년 | 2023년 |
|---|---|---|---|---|
| 전체 | | 180,305 | 177,587 | 163,473 |
| 부산시(*) | | 93,319 | 82,519 | 81,296 |
| 구,군계 | | 86,986 | 95,068 | 82,177 |
| 구군별 | 중 구 | 1,835 | 1,844 | 1,610 |
| | 서 구 | 2,191 | 2,970 | 1,979 |
| | 동 구 | 1,972 | 2,303 | 2,363 |
| | 영 도 구 | 2,038 | 1,814 | 1,933 |
| | 부 산 진 | 8,942 | 14,696 | 7,780 |
| | 동 래 구 | 8,913 | 8,168 | 7,677 |
| | 남 구 | 5,321 | 6,803 | 5,984 |
| | 북 구 | 4,832 | 4,360 | 4,164 |
| | 해 운 대 | 10,583 | 13,726 | 12,078 |
| | 사 하 구 | 7,672 | 7,275 | 7,044 |
| | 금 정 구 | 4,764 | 4,265 | 4,410 |
| | 강 서 구 | 11,141 | 10,044 | 9,249 |
| | 연 제 구 | 5,983 | 5,672 | 5,104 |
| | 수 영 구 | 3,767 | 4,069 | 4,167 |
| | 사 상 구 | 4,539 | 4,400 | 4,351 |
| | 기 장 군 | 2,493 | 2,659 | 2,284 |

(*) 부산시 본청의 미수납액에는 구·군에서 부과한 시세 중 500만원 이상에 해당하여 부산시 본청으로 이관된 미수납액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최근 3개년 부산시 및 구군별 지방세 미수납액을 분석한 결과 해운대구, 강서구, 동래구 등이 최근 미수납액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며, 미수납액이 높은 구군의 경우 대부분 최근 3개년 동안 평균적으로 미수납액이 증가하는 추세이므로 미수납액이 높은 구군별로 적극적인 징수활동을 통한 징수율 제고가 필요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한편, 전년 대비 주요 구군별 미수납액의 증감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 전년대비 증감액 | 증감사유 |
|---|---|---|
| 강 서 구 | 1,130 | ◦ 경기침체, 자영업 폐업 증가, 이자율 상승 등에 따른 지방소득세(종합소득, 양도소득) 미수납액 증가<br>◦ 산업단지 부동산 취득세 개발감면 이후 용도변경 등 추징사유발생에 따른 미수납액 증가 |
| 동 래 구 | 2,302 | ◦ 취득세(부동산) 주택건설사업자 주택 취득 후 3년 이내 멸실하지 아니함에 따른 추징건(약 20억원) 발생으로 미수납액 증가 |
| 부산진구 | △3,993 | ◦ 고액체납자의 정리보류에 따른 미수납액 감소 (정리보류액 64억원) |
| 해운대구 | △1,519 | ◦ 전자공시시스템을 활용한 체납법인 체납액 87억원 징수하여 전체 미수납액 감소 |

(*)전년 대비 주요 구군별 미수납액의 증감현황은 변동사항을 구군별 미수납액을 부산시청으로 이관하기 전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하였습니다.

**세입금 미수납액 사유별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 2025년 | | 2024년 | | 2023년 | |
|---|---|---|---|---|---|---|
| | 금 액 | 비 율 | 금 액 | 비 율 | 금 액 | 비 율 |
| 무재산 | 36,685 | 11.11% | 39,690 | 12.59% | 35,581 | 17.58% |
| 행방불명 | 1,900 | 0.58% | 2,346 | 0.74% | 2,789 | 1.38% |
| 납세태만 | 21,467 | 6.50% | 19,921 | 6.32% | 28,996 | 14.32% |
| 채무자회생법에 의한 유예 | 516 | 0.16% | 289 | 0.09% | 181 | 0.09% |
| 폐업 또는 부도 | 18,737 | 5.67% | 19,562 | 6.20% | 15,790 | 7.80% |
| 소송계류 | 1,055 | 0.32% | 5,817 | 1.84% | 10,901 | 5.38% |
| 자금압박 | 106,852 | 32.36% | 102,190 | 32.40% | 79,258 | 39.15% |
| 기 타 | 142,973 | 43.30% | 125,543 | 39.81% | 28,940 | 14.30% |
| 합 계 | 330,185 | 100.0% | 315,358 | 100.00% | 202,436 | 100.00% |

2025회계연도 세입금 미수납액 원인분석 결과 기타, 자금압박, 무재산, 납세태만, 폐업 또는 부도 순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특히, 기타에는 해운대구 우동 글로벌퀀텀콤플렉스 조성사업 부지를 외국계투자기업 하인즈 등에 매각에 따른 잔여대금 101,523백만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2022년 8월 제4차 공유재산심의회 심의완료에 따라 2022년 10월 제309회 임시회 공유재산 관리계획 원안이 가결됨에 따라 해운대구 글로벌 퀀텀콤플렉스 조성사업 부지의 매매계약체결 및 계약금 10% 납부가 2023년 1~2월 중 진행되었고 2024년 12월

매매대금의 40%인 약 757억원이 납부되었으나 이후 2025년 7월 매매대금 잔금이 PF 조달애로 등으로 미납되었습니다. 공유재산 매각 시 매수신청단계에서 매수자의 자금조달계획을 입수하여 조달방법, 조달처의 적정성 및 재무건전성(신용등급 조회, 재무제표, 부채비율 검토)에 대해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이후 당초 2025년 7월 중 매매대금의 잔여대금 납부기한이었으나 사업자는 PF조달 애로사항 등 사유로 납부계획 변경(연장)을 요청하며 잔여대금을 미납하였습니다. 이에 대응하여 투자유치과는 5차례의 매매잔금 및 분납이자, 연체료의 납부독촉 및 사업자 납부계획 제출을 요청하였고, 2026년 5월말을 납기로 연체료 등을 포함한 고지서 발송(6회차)했으며 사업자가 요청한 5월까지 미납할 경우 관련 행정절차 진행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만, 투자유치과는 미납시점(2025.7월)에 추가 담보요구 등 보다 적극적인 채권확보 노력을 했어야 할 것으로 파악됩니다.

### 나) 개선 및 권고사항

#### ① 징세특별기동팀의 활성화

매년 세입결산의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미수납액 관련하여, 금융재산 조회 및 압류수색 강화 등 적극적인 징수활동이 요구된다는 권고사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년 자금압박, 납세태만, 고액·상습체납자의 재산은닉 수법의 고도화 등 사유로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미수납액이 누적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매년 증가하는 미수납액의 징수에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 부산시 징세특별기동팀의 인원보강 및 인센티브 강화를 통한 활성화 지원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연도별 부산시(본청)의 지방세 징수실적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 2025년 | 2024년 | 2023년 |
|---|---|---|---|
| 부산시(본청)의 지방세 징수실적 | 13,136 | 7,945 | 4,902 |
| 1천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징수실적 | 11,800 | 6,200 | 2,800 |

먼저, 부산시의 지방세 징수를 위해 가택압류수색, 차량번호판 영치 등 현장 징수활동을 수행하는 징세특별기동팀의 경우 팀장을 포함한 6명으로 운영 중이며 최근 3개년 징수실적이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1천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징수실적도 매년 크게 증가하고 있고 특히, 25년 1억원 이상의 고액체납자 7명에 대해 88억원을 징수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현재 부산시 징세특별기동팀 소속 직원들은 지방세 관련 전문기관에서 매년 전문교육을 수료해 자체역량을 강화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가택수색 기법고도화 및 은닉재산 확보 등을 통해 활발한 징수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징세특별기동팀은 팀장을 포함한 총 6명의 인원으로 부산시 지방세 미수납액 중 30% 이상의 비율에 해당하는 시세 및 이관된 구·군에서 부과한 시세에 대한 징수활동을 하고 있으며, 징수활동 관련 행정업무를 병행하면서 절대적인 인력부족과 팀장을 제외한 팀원의 평균 근속기간이 1년 정도인 상황 속에서 제한된 현장 징수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이에 인력보강, 인센티브 제도개선을 통한 부산시(본청) 징세특별기동팀의 활성화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구체적으로 2026년 조직진단 시 타지자체의 징세특별기동팀의 운영현황을 참고하여 아래사항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a. 미수납금액 규모를 고려한 인력보강

부산시와 유사한 미수납 규모를 가진 지자체의 징세특별기동팀의 팀 구조, 인력배치, 인원 등을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인천시의 경우 총 25명으로 과서무, 전산이관, 과오납관리, 재산조회 행정주무관 및 고액체납 정리, 압류자동차, 가상자산압류 총괄 등 각 분야별 체납정리주무관으로 이원화된 업무분장 구조를 취하고 있습니다. 부산시와 인천시의 지방세 미수납액의 규모 대비 징세특별기동팀 현황을 비교해볼 때 1인당 담당지방세 미수납액의 차이가 크기 때문에 2026년 조직진단 시 징세특별기동팀의 인원보강이 시급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 부 산 | 인 천 | 차 이 |
|---|---|---|---|
| 본청 소관 미수납액(*) | 93,319 | 45,500 | 47,819 |
| 징세특별기동팀(**) | 6인 | 23인 | 17인 |
| 1인당 담당지방세 미수납액 | 15,553/인 | 1,978/인 | 13,575/인 |

(*) 2025년 본청소관 미수납액

(**) 2026년 5월 인천시 홈페이지 조직도 징수담당관 조회기준

### b. 인센티브 한도상향

현재 부산시 징세특별기동팀의 번호판영치, 금융자산 조회 후 압류, 신용불량자 등록 등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징수금액의 1~5%(체납연차에 따라 변동)에 대해 1건당 30만원, 월 100만원 한도 내에서 담당자 1명만 지급받고 있습니다. 현재 고액 체납자들의 재산 은닉 수법이 갈수록 고도화되는 상황에서, 징세특별기동팀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고액의 징수성과를 거두었음에도 현행 포상금 한도에 묶여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점은 직원들의 사기 저하와 직결될 수 있습니다. 현재 부산광역시 세입 징수 포상금 지급조례에 포상금 지급한도가 징수 1건당 30만원 및 개인별 월 100만원

으로 제한되어있는 징수포상금 지급조건을 완화하여 체납담당 직원들의 징수 노력에 상응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제도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지방세 체납은 고액의 체납자 뿐만 아니라 자동차세 등 소액체납의 비중도 상당하므로 번호판 영치 등 행정력이 많이 소요되는 소액 체납의 경우에도 일정 기준을 충족한다면 지급할 수 있도록 지급요건을 완화,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편, 주요 타시도의 징수포상금 기준을 비교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 기 관 | 지급기준 | 지급한도 |
|---|---|---|
| 서 울 | 1년차(1%), 2년차(3%), 3년차 이상(5%) | 건당 30만원<br>월 125만원 |
| 부 산 | 1년차(1%), 2년차(3%), 3년차 이상(5%) | 건당 30만원<br>월 100만원 |
| 인 천 | 1년차(1%), 2년차(3%), 3년차 이상(5%) | 건당 30만원<br>분기 300만원 |
| 울 산 | 1년차(1%), 2년차 이상(5%) | 건당 30만원<br>월 100만원 |

### ② 해운대구 글로벌퀀텀콤플렉스 조성사업 부지 관련사항

#### a. 공유지매각 시 절차 관련사항

일정 금액 이상의 대규모 공유지 매각 시 매수신청 단계부터 매수자의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받아 조달 방법과 조달처의 적정성, 그리고 매수자의 재무건전성(신용등급 조회, 재무제표 검토, 부채비율 분석 등)을 회계・재무・법률 분야 외부 전문가를 활용하여 신중하고 면밀하게 검토하는 절차가 보완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대규모 공유지를 기반으로 하는 개발・조성사업의 경우에는 사업타당성 검토와 연계하여, 사업자가 대규모 PF를 실행할 수 있는지에 대한 실현가능성까지 충분히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b. 미수납 이후 제반절차 관련 사항

해당 공유지 매각 건은 단일 거래임에도 불구하고 세외수입 미수납액 전체의 약 67.74%를 차지하는 대규모 사안으로, 잔여대금 미납 이후 현재까지 연체료 부과와 6차례의 납부 독촉 및 납부계획 제출 요청 등에 그친 것으로 파악됩니다. 향후 일정 금액 이상의 대규모 공유지 매각에 있어서는, 계약 체결 이후 건축비 상승에 따른 PF 대출지연 등과 같은 외부 불확실성이 현실화될 경우에 대비하여, 잔여대금의 회수가능성 확보 방안 및 추가담보요구 등 절차의 보완 필요성에 관한 내부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③ 지방행정제재·부과금

변상금・과태료・이행강제금 등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미수납율이 매년 40~50% 수준에서 구조적으로 반복되고 있는 바, 소멸시효 만료 전 압류・독촉 등 시효중단 조치를 철저히 이행하고 가산금 부과 및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 등 간접강제 수단을 적극 활용하여 징수율 제고를 위한 실효적 조치 강화가 필요합니다. 특히 건설기계 과태료, 하천 지난년도 변상금 등 징수율이 현저히 저조한 세목에 대해서는 부과 즉시 재산조회・압류를 병행하는 초기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징수불능 채권은 적기에 정리보류 처분하여 행정력 낭비를 방지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나아가서 현재 각 부서별로 분산 관리되고 있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징수업무를 세정정책담당관 주관의 연간 체납액 정리 종합계획과 연계한 통합 관리체계로 일원화하여 체계적・효율적인 사후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 2) 세입금 정리보류 처분에 관한 사항

### 가) 현황 및 문제점

세입금은 징수액이 결정되고 징수부과 후 징수로 인하여 과세권이 종결되고 부산시의 수입으로 인식되는 과정을 통해 부산시의 세입결산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다만 여러 사유로 인하여 미수납 금액이 발생되는 경우 각 미수납 사유별로 금액을 집계하고 사후적으로 징수 활동 등 사후관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도 징수가 사실상 불가능하거나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등 과세권이 없어질 경우 정리보류로 분류하여 사후관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연도별 세입금(지방세 + 세외수입) 정리보류액 대비 징수액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연 도 | 정리보류액(A) | 정리보류 취소후 징수액(B) | 정리보류액 대비 징수액(B/A) |
|---|---|---|---|
| 2025년 | 43,220 | 4,672 | 10.8% |
| 2024년 | 43,548 | 4,721 | 10.8% |
| 2023년 | 51,970 | 3,871 | 7.4% |

**연도별 세외수입 정리보류액 대비 징수액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연 도 | 정리보류액(A) | 정리보류 취소후 징수액(B) | 정리보류액 대비 징수액(B/A) |
|---|---|---|---|
| 2025년 | 2,386 | 23 | 1.0% |
| 2024년 | 2,797 | 39 | 1.4% |
| 2023년 | 2,322 | 50 | 2.2% |

2025회계연도의 정리보류액 대비 징수액 비율은 10.8%로 전년도 10.8% 대비 유의적인 변동은 없습니다. 다만, 지방세 대비 규모는 작지만 세외수입 연도별 정리보류액 대비 징수액 비율이 저조한데 대부분 선순위 과다로 실익이 없는 것으로 파악되나 수납이 가능한 항목은 별도로 파악하여 징수율 제고 대책을 마련할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정리보류 처분의 사유별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 2025년 | | 2024년 | |
|---|---|---|---|---|
| | 금 액 | 비 율 | 금 액 | 비 율 |
| 배분금액 부족 | 692 | 1.60% | 1,603 | 3.68% |
| 체납처분 중지 | 842 | 1.95% | 173 | 0.40% |
| 시효소멸 | 4,121 | 9.54% | 4,163 | 9.56% |
| 행방불명 | 299 | 0.69% | 838 | 1.92% |
| 무재산 | 13,616 | 31.50% | 19,775 | 45.41% |
| 채무자회생법에 의한 면제 | 2 | 0.00% | 1,550 | 3.56% |
| 평가부족액 | 23,507 | 54.39% | 15,390 | 35.34% |
| 기타 | 141 | 0.33% | 56 | 0.13% |
| 합 계 | 43,220 | 100.00% | 43,548 | 100.00% |

2025회계연도 세입금 정리보류 처분의 원인분석 결과 평가부족액, 무재산, 시효소멸 순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특히 평가부족액은 고액체납법인 증가에 따라 전년 대비 약 8,117백만원 증가하였습니다. 반면 무재산은 25년 LCT 관련 체납 건 약 6,700백만원 징수함에 따라 감소하였으며, 배분금액부족의 경우 선순위 압류채권 확보로 경공매 배당수납액이 증가함에 따라 감소하였습니다.

### 나) 개선 및 권고사항

최근 3개년도의 전년도 정리보류액 대비 징수액 비율은 7.4~10.8% 수준이며 정리보류 처분 사유를 살펴보면 매년 평가액부족, 무재산, 시효소멸 순으로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정리보류 처분 사유 중 평가부족액 금액은 정리보류 처분사유 중 첫번째 큰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전년도 대비 약 8,117백만원(52.74%) 증가한 것은 정리보류 시 압류재산의 평가를 엄격히 적용하여 정리보류 처분하고, 체납세를 적극적으로 독려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됩니다

정리보류 처분 사유 중 두 번째 큰 비율인 무재산의 경우 고액·상습체납자의 변칙적인 재산은닉을 통한 납부회피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정리보류 금액 중 재산은닉을 통해 무재산으로 가장한 금액이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고액·상습체납자의 변칙적인 재산 적발에 가장 적합한 대안인 징세특별기동팀의 인력 보강 및 처우 개선을 바탕으로 지능적 재산은닉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기획조사를 실시하고, 타 지자체와의 적극적인 교류를 통해 선진 징수기법을 발굴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정리보류 처분 사유 중 시효소멸은 불법적 체납한 사람들이 악용하지 않도록 정리보류 이후에도 부동산, 금융자산 등 재산조회를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지방세징수법에 따라 미납된 세금에 대하여 압류 및 독촉 등 행위를 하여 시효를 중단시키는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통해 시효완성으로 채권이 소멸되지 않도록 관리가 요구됩니다.

### 3) 보조금 반환수입에 관한 사항

#### 가) 현황 및 문제점

일반회계 세외수입 중 보조금 반환수입의 징수결정액과 환급액은 각각 74,150백만원과 794백만원으로 집계되었는데 전년도 대비 징수결정액은 2,201백만원(3.06%) 증가하였으며, 환급액 또한 509백만원(39.04%) 감소하였습니다.

또한, 보조금 반환수입의 미수납액이 전년도 1,276백만원이었으나, 당해연도 미수납액은 753백만원으로 감소하였으며, 총 감소금액은 523백만원(40.99%)입니다.

전년도 대비 보조금반환수입의 미수납액이 전반적으로 개선되었으나 반환의 주체인 구·군 등에서 반납금액을 예산에 편성하지 않았거나, 일부부서에서 이중부과하여 미수납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단위 : 원)

| 부 서 | 세 입 목 | 미 수 납 액 | 미수납 사유 |
|---|---|---|---|
| 아동청소년과 | 시·도비보조금등반환수입 | 110,549,620 | 구군 예산편성 누락으로 미반납 |
| | 위탁비반환수입 | 25,268,020 | 이중부과 건 |
| 장애인복지과 | 시·도비보조금등반환수입 | 132,937,770 | 구군 예산편성 누락으로 미반납 |
| | 자체보조금등반환수입 | 100,600 | 추경예산편성 누락으로 미반납 |
| 노인복지과 | 시·도비보조금등반환수입 | 111,395,010 | 구군 예산편성 누락으로 미반납 |
| | 위탁비반환수입 | 1,990,630 | 구군 예산편성 누락으로 미반납 |
| 출산보육과 | 시·도비보조금등반환수입 | 89,677,380 | 구군 예산 미편성 및 고지서 중복발급 |
| 연구개발과 | 시·도비보조금등반환수입 | 71,912,290 | 기술사업화 협업플랫폼 구축사업 1단계 집행잔액 |

### 나) 개선 및 권고사항

전년도 대비 보조금반환수입의 미수납액이 감소하여 전반적으로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여전히 구군 예산 미편성 및 세외수입 이중부과 금액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구·군에 대한 보조금 반환수입이 미수납되는 경우는 구·군에서 세출 예산 편성시 이를 간과한 결과이므로 보조금을 지급한 각 부서에서는 보조금을 수취한 구·군에 예산편성 시 보조금반환이 반영되도록 독려가 필요하며 아동청소년과, 노인복지과는 작년에도 동일한 사유의 지적이 있었음에도 개선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별도의 상세안내 등 추가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4) 초과세입에 관한 사항(예산액과 실제수납의 차이)

### 가) 현황 및 문제점

지방재정법 제34조(예산총계주의의 원칙)에 따르면 회계연도의 모든 수입은 세입으로 하고, 모든 지출은 세출로 하여 세입과 세출은 모두 예산에 편입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세정운영담당관 등 23개 부서에서 세입예산을 과소 편성하여 초과세입액이 발생하였으며, 2025회계연도 예산현액 대비 실제수납액 과다 발생현황(예산현액과 실제수납액의 차이 1억원 초과건)은 아래와 같으며 차이금액은 12,633백만원입니다.

(단위 : 백만원)

| 부서명 | 세입과목 | 예산현액 (A) | 징수 결정액 | 실제 수납액(B) | 미수납액 | 수납-예산 (B-A) |
|---|---|---|---|---|---|---|
| 합 계 | | 163,582 | 292,242 | 176,215 | 116,027 | 12,633 |
| 세정운영담당관 | 기타이자수입 | 18,000 | 19,550 | 19,550 | - | 1,550 |
| 문화예술과 | 기타이자수입 | 742 | 1,935 | 1,933 | 2 | 1,191 |

| 부서명 | 세입과목 | 예산현액 (A) | 징수 결정액 | 실제 수납액(B) | 미수납액 | 수납-예산 (B-A) |
|---|---|---|---|---|---|---|
| 노인복지과 | 증지수입 | 4,628 | 5,423 | 5,423 | - | 795 |
| 도로안전과 | 그외수입 | 5,042 | 5,814 | 5,813 | 1 | 771 |
| 중소상공인지원과 | 기타이자수입 | 1,575 | 2,284 | 2,284 | - | 709 |
| 회계재산담당관 | 공공예금이자수입 | 14,500 | 15,181 | 15,181 | - | 681 |
| 클래식부산 | 입장료수입 | 1,311 | 1,898 | 1,898 | - | 587 |
| 농축산유통과 | 징수교부금수입 | - | 540 | 540 | - | 540 |
| 총무과 | 그외수입 | 1,826 | 2,342 | 2,341 | - | 515 |
| 초과세입 1억원 초과 5억원 미만 표기생략 | | | | | | |

세정운영담당관, 문화예술과, 중소상공인지원과, 회계재산담당관의 이자수입은 지방소비세 은행보관일 증가, 수납여부 불확실 및 예상보다 높은 이자수령에 따라 초과세입 4,131백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노인복지과의 증지수입은 25년 호흡기질환 사망자 증가로 인해 관내 사망자 수가 예측치 대비 장사시설 수요 증가에 따라 초과세입 795백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도로안전과, 총무과의 그외수입은 위탁사업비 집행잔액 반납금 세입 미편성 및 임차관사 전세보증금 반환에 따라 초과세입 1,286백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클래식부산의 입장료수입 및 농축산유통과의 징수교부금수입은 클래식 콘서트홀 공연횟수 증가 및 농지보전부담금 부과 업무수수료 세입미편성에 따라 초과세입 1,127백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농축산유통과의 징수교부금 수입의 경우 2014년 이후 처음 발생한 농지전용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부과, 수납업무 수수료임에 따라 사전예측의 어려움이 있었을 것으로 파악됩니다.

### 나) 개선 및 권고사항

세입예산을 바탕으로 하여 세출예산이 결정되며 그에 따라서 각 부서의 업무가 정해지게 되므로 세입예산을 누락 없이 정확하게 편성하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한 부분입니다.

세정운영담당관 등 23개부서의 예산 미반영 금액은 12,633백만원이 넘는 막대한 금액이므로 추후 세입예산 편성 시에는 보다 면밀한 검토를 통하여 누락없이 반영이 되어야 하며, 특히 아래사항에 대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① 세입예산현액이 0원인 상태에서 세입이 수납된 항목이 건설행정과, 복지정책과, 아동청소년과에서 발생하였으며, 수납불확실을 사유로 예산을 미편성하고 정리추경에서 수납처리하는 패턴이 문화예술과, 장애인복지과, 바이오헬스과, 출산보육과, 아동청소년과에서 확인되었습니다. 예산편성단계에서 수입발생예정항목을 전수로 검토하여 세입에 반영하고 정리추경을 활용한 사후 처리관행 개선이 필요합니다.

② 노인복지과의 증지수입, 기타사용료, 그외수입은 장사시설 수요증가로 초과세입 총 1,440백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부산시의 고령화 추이가 지속되는 상황이며 작년에도 동일한 항목에서 초과세입이 발생한 바, 장사시설 관련 세입은 최근 3개년 수납실적을 기초로 예산을 현실화하여 편성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③ 생활체육과, 미래에너지산업과의 자체보조금등반환수입 및 복지정책과의 그외수입은 세입미편성 및 세입과목 착오에 따라 초과세입 총 556백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세외수입시스템 입력 전 세입과목의 적정성 검증강화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④ 도로안전과의 위탁기관집행잔액 반납금 및 총무과의 임차관사 전세보증금 반환의 세입미편성은 당시 반환의 불확실성이 존재하여 결손가능성을 염두에 두어 초과세입으로 인식한 것으로 파악되나 반납가능성을 예측하여 세입예산에 반영하거나 최소한 연도 중 반납액 확정 즉시 추경에 반영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나. 세출결산에 관한 사항

### 1) 세출결산 총괄 사항

#### 가) 현황 및 문제점

일반회계의 **최근 5년간 예산현액, 세출결산액, 이월액과 보조금 반납금 및 집행잔액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 2025년 | 2024년 | 2023년 | 2022년 | 2021년 |
|---|---|---|---|---|---|
| 예산현액(A) | 15,619,337 | 14,110,226 | 13,126,532 | 13,330,541 | 12,968,088 |
| 세출결산액 | 15,087,173 | 13,480,303 | 12,494,905 | 12,647,184 | 12,277,395 |
| 이 월 액(B) | 356,790 | 301,611 | 323,100 | 387,612 | 367,173 |
| 증 감 액 | 55,179 | △21,489 | △64,512 | 20,439 | 134,073 |
| 비율(B/A) | 2.28% | 2.14% | 2.46% | 2.91% | 2.83% |
| 보조금반납금(C) | 14,532 | 152,608 | 68,108 | 20,074 | 33,189 |
| 증 감 액 | △138,076 | 84,500 | 48,034 | △13,115 | △21,932 |
| 비율(C/A) | 0.09% | 1.08% | 0.52% | 0.15% | 0.26% |
| 집행잔액(D) | 160,842 | 175,704 | 240,419 | 275,671 | 290,331 |
| 증 감 액 | △14,862 | △64,715 | △35,252 | △14,660 | 221,986 |
| 비율(D/A) | 1.03% | 1.25% | 1.83% | 2.07% | 2.24% |
| 계(E=B+C+D) | 532,164 | 629,923 | 631,627 | 683,357 | 690,693 |
| 비율(E/A) | 3.41% | 4.46% | 4.81% | 5.13% | 5.33% |
| 순세계잉여금 | 270,248 | 403,433 | 526,661 | 476,538 | 594,992 |

2025회계연도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전년도 대비 1,509,111백만원(10.7%) 증가하였고, 세출결산액은 전년도 대비 1,606,870백만원(11.9%) 증가하였습니다.

2025회계연도 순세계잉여금은 270,248백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133,185백만원 감소하였고, 최근 5년 평균 순세계잉여금 524,371백만원 대비 254,123백만원 감소하였습니다.

2025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결산 집행잔액은 160,842백만원이고, 예산현액 대비 집행잔액 비율은 1.03%로 최근 5년간 평균 집행잔액 비율 1.59%에 비해 0.56% 감소하였으며, 전년도(1.25%) 대비 0.22% 감소하였습니다.

또한, **최근 3년간 예산액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 | 2025년 | 2024년 | 2023년 |
|---|---|---|---|---|
| 당 초 예 산 | | 13,319,778 | 12,590,323 | 12,005,016 |
| 제1회 추경예산 | 증 감 | 286,602 | 932,098 | 592,177 |
| | 계 | 13,606,380 | 13,522,421 | 12,597,193 |
| 제2회 추경예산 | 증 감 | 396,461 | 240,647 | 120,785 |
| | 계 | 14,002,841 | 13,763,068 | 12,717,978 |
| 제3회 추경예산 | 증 감 | 1,070,072 | - | - |
| | 계 | 15,072,913 | - | - |
| 제4회 추경예산 | 증 감 | 215,368 | - | - |
| | 계 | 15,288,281 | - | - |
| 간주예산 | 증 감 | 29,445 | 24,058 | 20,942 |
| | 계 | 15,317,726 | 13,787,126 | 12,738,920 |
| 최 종 예 산 | | 15,317,726 | 13,787,126 | 12,738,920 |
| 당초예산 대비 최종예산 | | 115.00% | 109.51% | 106.11% |

최근 3년간 당초 예산은 각 회계연도별 2회씩 변경되었으나, 2025회계연도는 총 4회 예산변경이 있었고 최종예산은 당초대비 15.0% 이상 증가하였습니다.

매 회계연도별로 예산액의 흐름을 보면 당초예산 편성 시 일정 규모의 예산을 편성하고, 이후에 세입 등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2회(정기추경/결산추경) 이상의 추경예산을 통하여 예산을 조정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당초 예산 편성 시에 충분한 당해연도의 세입 및 세출의 예상을 고려하지 않고 사후에 추경예산으로 필요한 부분을 변경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당해연도 간주예산 처리액은 전년도 대비 5,387백만원 증가하였습니다.

### 나) 개선 및 권고사항

2025회계연도 순세계잉여금은 270,248백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133,185백만원 감소하였으며, 이는 대내외 세입여건 불확실성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5년 평균 대비 세수추계 정확성이 향상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업과 관련한 연간 필요한 자금의 일부만 당초예산의 세출로 편성하고 이후에 자금이 확보되면 추가경정예산을 통하여 세출을 추가로 편성하는 방식이라면 일부의 사업은 필요한 자금이 확보되지 않아 사업의 중단 및 보류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당초예산 편성 시 연간 사업별 필요예산을 충분히 고려하여 주요 투자(경상)사업 설명서를 작성한 후 세출예산을 편성하여 이후 추가경정예산을 최소화하는 것이 연도별로 사업을 안정적으로 시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당초예산의 철저한 편성으로 예산편성의 유동성을 최소화하여야 세입과 세출예산이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관리가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 2) 예산이월 관련 일반 사항

### 가) 현황 및 문제점

최근 **5년간 일반회계 세출예산 이월액**을 세부적으로 구분하여 비교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 2025년 | 2024년 | 2023년 | 2022년 | 2021년 |
|---|---|---|---|---|---|
| 명시이월 | 243,644 | 217,897 | 217,983 | 196,993 | 225,062 |
| 증감액 | 25,747 | △86 | 20,945 | △28,069 | 77,429 |
| 사고이월 | 90,175 | 82,345 | 103,974 | 122,482 | 78,740 |
| 증감액 | 7,830 | △21,629 | △18,508 | 43,742 | 6,522 |
| 계속비이월 | 22,971 | 1,369 | 1,143 | 68,137 | 63,371 |
| 증감액 | 21,602 | 226 | △66,994 | 4,766 | 50,122 |
| 합 계 | 356,790 | 301,611 | 323,100 | 387,612 | 367,173 |
| 증감액 | 55,179 | △21,136 | △64,512 | 20,439 | 134,073 |

2025회계연도 명시이월, 사고이월 및 계속비이월은 전년도 대비 각각 25,747백만원, 7,830백만원 및 21,602백만원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이월액의 건수 및 자금별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 2025 년 | | | 2024 년 | | | 2023 년 | | |
|---|---|---|---|---|---|---|---|---|---|
| | 건수 | 자금 | 자금없는 | 건수 | 자금 | 자금없는 | 건수 | 자금 | 자금없는 |
| 명 시 | 170 | 216,086 | 27,558 | 186 | 217,177 | 720 | 135 | 217,630 | 353 |
| 사 고 | 163 | 89,775 | 400 | 129 | 82,345 | - | 182 | 103,974 | - |
| 계속비 | 7 | 22,971 | - | 4 | 1,369 | - | 4 | 1,143 | - |
| 합 계 | 340 | 328,832 | 27,958 | 319 | 300,891 | 720 | 321 | 322,747 | 353 |

당해연도에는 전년도와 대비하여 자금을 수반하는 이월액이 27,941백만원 증가하였으며, 자금이 없는 이월액은 27,238백만원 증가하였습니다.

이월액 중 명시이월은 전년 대비 발생건수는 감소하였지만 금액은 증가하였으며, 사고이월 및 계속비이월은 발생건수 및 금액이 증가하였습니다.

명시이월의 주요내용은 중앙대로 확장공사, 연근해어선감척(직접)사업, 부산 마리나비즈센터 건립사업, 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 설치사업, 덕천(화명)~양산간 도로교통체계 개선사업(전환사업), 수영강 휴먼브리지 조성(전환사업) 등이며, 사고이월의 경우 15분 도시 부산 조성, 영화의전당 지하차도 건립공사,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보조), 온천5호교 재가설(확장) 공사(전환사업) 등입니다. 그리고 계속비이월은 식만~사상 혼잡도로, 만덕~센텀 도시고속화도로 건설, 차기매립장 조성 등입니다.

**주요 이월액의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부 서 | 사 업 명 | 예 산 현 액 | 명 시 이 월 | 사 고 이 월 | 이 월 사 유 |
|---|---|---|---|---|---|
| 15분도시기획과 | 15분 도시 부산 조성 | 30,571 | - | 11,191 | 절대공기 부족 |
| 도시인프라개발과 | 부산 마리나비즈센터 건립 | 22,083 | 9,419 | 541 | 준공시기 미도래 |
| 도로계획과 | 중앙대로 확장공사 | 72,819 | 7,708 | 2,281 | 절대공기 부족 |
| 도로계획과 | 온천5호교 재가설(확장) 공사(전환사업) | 11,192 | - | 5,231 | 절대공기 부족 |
| 도로계획과 | 덕천(화명)~양산간 도로교통체계 개선사업(전환사업) | 13,585 | 8,815 | 2,350 | 사업계획 변경 |
| 도로계획과 | 영화의전당 지하차도 건립공사 | 9,981 | - | 6,539 | 절대공기 부족 |
| 도로안전과 | 수영강 휴먼브리지 조성(전환사업) | 14,524 | 8,352 | 2,258 | 절대공기 부족 |
| 맑은물정책과 | 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 설치사업 | 9,497 | 9,487 | - | 보상지연에 따른 사업비 이월 |

| 부 서 | 사 업 명 | 예 산 현 액 | 명 시 이 월 | 사 고 이 월 | 이 월 사 유 |
|---|---|---|---|---|---|
| 탄소중립정책과 |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보조) | 34,444 | - | 5,610 | 보조금 청구기한 미도래 |
| 수산정책과 | 연근해어선감척(직접) | 42,563 | 27,119 | 2 | 절대공기 부족 |

명시이월과 사고이월 사유는 큰 변화가 없으며, 주로 세부사업의 공사지연 및 준공시기 미도래와 보상지연 등으로 파악되었습니다.

### 나) 개선 및 권고사항

예산이월의 원인을 살펴보면 전년도와 크게 변화는 없으며, 대부분 절대공기 부족, 공사 준공시기 미도래, 보상협의 기간 소요 및 사전절차 지연 등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동일한 사업이 계속적으로 의회의 승인 및 지출원인행위 후 지출액의 과소로 이월되는 것은 매년 예산편성 시 당해연도에 필요한 사업의 선정 및 사업의 진행과정에 대한 세밀한 분석이 이루어지지 않고 예산 확보 후 1년간 명시이월 후 그 다음연도에 다시 1년간 사고이월을 하여 관습적인 이월이 이루어지는 부분도 있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연도별 명시이월과 사고이월 사유에 해당하는 사업은 체계적인 분석을 통하여 연도별 사업예산 편성 시 연말에 이월예산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 3) 편성된 추경예산의 과도한 이월, 불용 미집행

#### 가) 현황 및 문제점

추가경정예산 제도의 취지는 예산집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예상치 못한 지출에 대응해 재정의 유연성을 확보하고 경제 성장률의 급격한 변동 등으로 인해 경제 정책의 변화가 필요한 경우, 기존 예산에 더해 추가경정예산을 활용해 필요한 정책을 추진하여 시민의 세금을 주된 재원으로 하는 예산을 적재적소 그리고 적기에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배분 집행하기 위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취지에도 불구하고 추경예산 편성 후 당해연도 내에 집행되지 못하고 이월되는 사업이 있으며, 추경예산보다 명시이월 금액이 같거나 높은 사업도 다수 존재하고 있습니다.

**명시이월액이 추경예산과 같거나 높은 주요 사업**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부 서 | 세 부 사 업 | 추경 예산 | 이 월 액 | | | 집행 잔액 |
|---|---|---|---|---|---|---|
| | | | 명시이월 | 사고이월 | 계 | |
| 안전정책과 | 국민안전체험관 건립 | 500 | 500 | 771 | 1,271 | - |
| 생활체육과 | 어르신을 위한 복합힐링 파크 조성 | 1,200 | 1,200 | - | 1,200 | - |
| 자치행정과 | (가칭)YS 민주역사 기념관 건립 | 1,278 | 3,156 | 560 | 3,716 | - |
| 도로계획과 | 제2대티터널 건설 | 1,410 | 1,410 | - | 1,410 | - |
| 건축정책과 | 민간전문가제도 운영 지원 | 100 | 100 | - | 100 | - |
| 트라이포트기획과 | 봉림 화물자동차 공영 차고지 등 조성사업 | 3,636 | 3,636 | 137 | 3,773 | - |

| 부 서 | 세 부 사 업 | 추경 예산 | 이 월 액 | | | 집행 잔액 |
|---|---|---|---|---|---|---|
| | | | 명시이월 | 사고이월 | 계 | |
| 하천관리과 | 낙동강 하굿둑 개방 대책사업 | 4,800 | 4,800 | 3,034 | 7,834 | - |
| 하천관리과 | 생태하천복원사업 (괴정천)(전환사업) | 200 | 200 | - | 200 | - |
| 하천관리과 | 동천 유지용수 공급관로 보수(전환사업) | 1,000 | 1,000 | 763 | 1,763 | - |
| 공원여가정책과 | 친환경 목조전망대 조성(국산목재 목조건축 실연사업) | 500 | 500 | - | 500 | - |
| 수산정책과 | 연근해어선감척(직접) | 20,057 | 27,119 | 2 | 27,121 | - |

### 나) 개선 및 권고사항

이미 성립된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어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이미 본예산으로 확정된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변경을 가하거나 추가로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해야할 것입니다.

이에 행정 수요를 감안하여 사전 면밀한 계획과 필요한 절차를 충분히 진행한 다음 당해 연도 내에 집행 가능한 규모의 예산만을 편성함으로써 불필요한 예산이 과도하게 편성되어 연도말까지 집행되지 못하거나 이월되는 사례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추경 등을 통해 편성된 예산을 추경 편성 이후 사전절차나 관계기관 협의 등을 할 수밖에 없는 사업들이 있으나, 연도말에 원인행위를 하면서 익년도로 준공기한을 정하는 등의 행위는 “예산 단년도주의 원칙” 및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을 훼손하는 것으로 이러한 추경예산의 과도한 편성 및 집행 관행은 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 4) 세출예산 집행잔액에 관한 주요 사항

#### 가) 현황 및 문제점

**일반회계 세출의 집행잔액**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 2025년 | | 2024년 | | 2023년 | |
|---|---|---|---|---|---|---|
| | 금 액 | 비 율 | 금 액 | 비 율 | 금 액 | 비 율 |
| 집행사유 미발생 | 6,232 | 3.87% | 4,624 | 2.63% | 38,266 | 15.92% |
| 증 감 액 | 1,608 | 34.78% | △33,642 | △87.92% | 36,005 | 1592.44% |
| 예산절감 | 1,033 | 0.64% | 14 | 0.01% | 37 | 0.02% |
| 증 감 액 | 1,019 | 7278.57% | △23 | △62.16% | △147 | △79.89% |
| 낙찰차액 | 1,915 | 1.19% | 885 | 0.50% | 1,883 | 0.78% |
| 증 감 액 | 1,030 | 116.38% | △998 | △53.00% | 706 | 59.98% |
| 지출잔액 | 56,647 | 35.22% | 84,210 | 47.93% | 135,444 | 56.34% |
| 증 감 액 | △27,563 | △32.73% | △51,234 | △37.83% | △8,098 | △5.64% |
| 보조금 정산잔액 | 7,741 | 4.81% | 22,842 | 13.00% | 11,736 | 4.88% |
| 증 감 액 | △15,101 | △66.11% | 11,106 | 94.63% | 5,474 | 87.42% |
| 예비비 | 87,274 | 54.26% | 63,129 | 35.93% | 53,053 | 22.07% |
| 증 감 액 | 24,145 | 38.25% | 10,076 | 18.99% | △69,193 | △56.60% |
| 합 계 | 160,842 | 100.00% | 175,704 | 100.00% | 240,419 | 100.00% |
| 증 감 액 | △14,862 | △8.46% | △64,715 | △26.92% | △35,252 | △12.79% |

당해연도 일반회계 집행잔액은 160,842백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14,862백만원(8.46%) 감소하였습니다.

최근 3년간 각 분야별 예산현액 대비 집행잔액 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

| 분 야 별 | 2025년 | 2024년 | 2023년 |
|---|---|---|---|
| 일 반 공 공 행 정 | 0.37 | 0.55 | 0.82 |
| 공 공 질 서 및 안 전 | 0.08 | 0.06 | 0.13 |
| 교 육 | 0.00 | 0.00 | 0.00 |
| 문 화 및 관 광 | 1.23 | 1.03 | 5.23 |
| 환 경 | 1.62 | 2.93 | 1.46 |
| 사 회 복 지 | 0.03 | 0.16 | 0.06 |
| 보 건 | 0.16 | 0.25 | 1.05 |
| 농 림 해 양 수 산 | 0.33 | 0.50 | 0.67 |
| 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 | 0.80 | 0.48 | 1.78 |
| 교 통 및 물 류 | 0.99 | 3.10 | 7.15 |
| 국 토 및 지 역 개 발 | 1.19 | 0.98 | 0.45 |
| 과 학 기 술 | 0.00 | 0.00 | 0.00 |
| 기 타 | 2.63 | 2.54 | 2.78 |

문화및관광, 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 국토및지역개발 분야는 집행잔액 비율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예산편성은 하였으나 지출 또는 다음연도 이월액이 전혀 발생하지 않은 1천만원 이상 전액불용 사업(예비비 제외)으로는 일반회계의 경우 7개 사업 784백만원이며, 주요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 부 서 | 세 부 사 업 | 통계목 | 예산현액 | 집행잔액 | 비율 |
|---|---|---|---|---|---|
| 인구정책담당관 | 국고보조금반환 | 802-01 | 28 | 28 | 100 |
| 예산담당관 | 기관운영 | 204-01 | 36 | 36 | 100 |
| 예산담당관 | 기관운영 | 301-09 | 150 | 150 | 100 |
| 복지정책과 | 지역복지사업 지원(직접) | 301-14 | 10 | 10 | 100 |
| 도로계획과 | 황령3터널 건설 | 401-02 | 500 | 500 | 100 |
| 도로계획과 | 황령3터널 건설 | 401-03 | 50 | 50 | 100 |
| 공항기획과 | 김해공항 중·장거리 국제노선 확충 | 202-03 | 10 | 10 | 100 |

당해연도의 1천만원 이상 전액불용 사업(예비비 제외)은 일반회계의 경우 전년도의 14개 사업 845백만원에 비하여 사업수는 7개 감소하였고, 집행잔액은 61백만원 감소하였습니다.

### 나) 개선 및 권고사항

집행잔액은 예산의 집행과정에서 여러가지 사유에 의하여 당연히 발생하는 것으로, 예산의 관행적 편성, 편성된 예산의 소극적 집행, 추경 시 적절한 감액 결정 누락 등에 그 원인이 있습니다. 이러한 집행잔액의 발생은 최초예산 편성 시 과거의 집행잔액 발생 분석과 사업계획 수립 시 필요한 사업예산의 예측과 사용을 통하여 집행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예산절감을 위한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5) 결산서 첨부서류(주요사업 추진현황)의 정확성 제고 및 관리 개선

#### 가) 현황 및 문제점

지방자치단체 결산 통합기준 등에 따라 결산서 첨부서류로 작성되는 '주요사업 추진현황'은 시(市)에서 추진 중인 대규모 핵심 사업들의 재무적 투입 내역과 물리적 진행 상황을 투명하게 공개하여, 의회와 시민의 재정 이해도를 높이는 매우 중요한 결산 정보입니다. 작성 기준에 따르면, 시설공사의 경우 단위사업별로 총사업비 기준 50억 원 이상인 사업, 조사·연구 용역사업의 경우 건당 3억 원 이상인 사업을 의무적으로 현황 서식에 포함하여야 합니다.

현재 시스템(e-호조 등)상 주요사업추진현황 작성 대상 여부는 담당 부서에서 최초 사업정보 재무정보 입력 시 작성대상 여부를 선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담당자가 작성 대상으로 체크한 후 주요사업추진현황 서식 작성을 위해 사업별 정보를 불러오면, 해당 사업의 '총사업비', '사업기간', '기투자금액(전년도까지의 누적 지출액)' 정보는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연동되어 기재됩니다. 그러나 자동으로 불러오는 항목 이외의 '당해연도 사업비' 항목은 각 부서 담당자가 직접 수기로 입력하도록 되어 있으며, 사업의 '추진상황' 및 '종합진도율' 역시 명확한 가이드라인 없이 각 부서별 판단에 따라 임의로 기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더하여, 시스템상 자동으로 불러와진 '총사업비' 수치는 입력자가 임의로 금액을 수정할 수 있도록 허용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수기 입력 위주의 현행 작성 방식과 적절한 전산 통제가 결여된 시스템 구조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첫째, 입력통제(Input Control) 부재에 따른 작성 대상 사업의 원천적 누락 위험입니다.** 작성 대상 사업의 선정이 총사업비 규모에 기반한 자동 추출 방식이 아닌 담당자의 수기 체크에 전적으로 의존함에 따라, 체크 누락 시 해당 사업이

주요사업 추진현황 리스트에서 원천적으로 배제되는 위험이 상존합니다. 실제로 금번 결산자료 검토 결과, 당해연도 시설비 예산이 수십억 원에서 수백억 원에 이르고 총사업비가 50억 원을 명백히 초과하는 시설공사 중 수기 체크 누락 등의 사유로 현황표에서 누락된 사례가 다수 확인되었으며, 그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부 서 | 세부사업 | 총사업비 |
|---|---|---|
| 공원여가정책과 | 달맞이공원 조성(전환사업) | 23,300 |
| 건설본부 |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북측진입도로 건설 | 163,607 |
| 하천관리과 | 동천 유지용수 공급관로 보수(전환사업) | 5,100 |
| 트라이포트기획과 | 봉림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등 조성사업 | 10,175 |
| 공공하수인프라과 | 온천천 대심도 하수저류시설 설치사업 | 400,000 |

**둘째, 임의 수정에 대한 승인 통제(Authorization Control) 부재로 인한 재무 데이터의 정합성 훼손입니다.** 전산에서 자동으로 불러와진 총사업비를 담당 부서에서 임의로 수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수정 금액이 최종 반영되기 전 예산부서의 검토 및 승인을 거치는 절차가 부재합니다. 이에 따라 임의 수정된 총사업비에 오류가 발생할 가능성이 항시 존재하는 상태입니다.

이상을 종합하면, 현행 '주요사업 추진현황'은 수기 입력에 수반되는 작성 오류, 시스템적 통제 절차의 미흡 등으로 인하여 시(市)가 추진 중인 주요 사업의 진행 현황에 대한 신뢰성 있는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는 재정 운용의 투명성 확보에 제약 요인으로 작용하므로, 시스템 통제 강화 및 정비를 통한 관리 개선이 요구됩니다.

### 나) 개선 및 권고사항

결산서 첨부서류인 ‘주요사업 추진현황’은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시(市) 핵심 사업의 재무적 투입 내역과 물리적 진행 과정을 공시함으로써 의회 및 시민의 재정 감시와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핵심 결산 보고서입니다. 앞서 지적한 작성 대상 사업의 원천적 누락 위험, 재무 데이터의 정합성 훼손 우려 등의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고 결산 정보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전산 시스템 개편 및 제도 개선을 권고드립니다.

**① 전산 시스템 로직 개편을 통한 작성 대상 사업의 자동 추출 및 예산 및 지출 자료 자동연동 필요**

담당자의 주관적 판단 및 수기 체크(Manual Check)에 의존하고 있는 현행 작성 대상 선정 방식을, 시스템 기반의 자동 추출 방식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단위사업별로 지방재정관리시스템(e-호조)에 입력된 ‘총사업비’ 데이터를 시스템이 직접 인식하여, 작성기준 금액(시설공사 50억 원 이상, 조사·연구 용역 3억 원 이상)을 충족하는 사업이 예외 없이 주요사업 추진현황 서식에 자동으로 리스트업되도록 자동화 로직(Logic)을 구축하는 방안을 제안드립니다. 이를 통해 대규모 사업이 담당자의 체크 누락으로 인하여 결산서 첨부서류 서식에서 배제되는 위험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현행 수기입력 방식을 벗어나, 시스템에 기 입력된 실제 지출액(집행액)’ 데이터가 자동으로 연동되도록 체계를 구축하여야 합니다.

② 총사업비 임의 수정에 대한 전산 통제 및 예산부서 승인 절차 도입

시스템에서 자동 연동된 총사업비를 부서 담당자가 별도 승인 없이 임의로 수정할 수 있는 현행 입력 방식은, 재무 데이터의 무결성을 훼손할 수 있는 내부통제상 취약점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사업계획 변경 등의 사유로 총사업비 수정이 불가피한 경우, 담당자의 단독 수정만으로 확정될 수 없도록 전산상 입력을 통제하고, 수정된 금액이 결산 서식에 최종 반영되기 위해서는 예산 부서의 전산상 승인 절차를 반드시 거치도록 시스템 통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③ 객관적 지표 산정을 위한 '종합진도율' 산출 기준 수립 및 주석 공시

현재 부서별 주관적 기준에 따라 산정되고 있는 '종합진도율'에 대하여, 행안부 차원의 통일된 산정 가이드라인 수립이 필요합니다. 구체적으로, 총사업비 대비 누적 지출액의 비율을 의미하는 '재무적 진도율(투입률)'과 실제 현장의 공정 진행 정도를 의미하는 '물리적 공정률'을 명확히 구분하여 산정 방식을 정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울러 수립된 산정 기준은 결산서 첨부서류 하단에 주석으로 명시하여 정보 이용자가 백분율(%) 수치의 의미를 정확히 해석할 수 있도록 공시하고, 모든 부서가 동 통일 기준에 따라 객관적으로 산출된 진도율을 기재하도록 규정함으로써 핵심 사업의 실제 진행 속도와 지연 리스크가 직관적으로 파악될 수 있도록 서식을 고도화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결론적으로, 시스템 기반의 자동화 통제와 명확한 재무 작성기준의 수립이 선행될 때, 비로소 결산서 첨부서류가 행정의 투명성을 뒷받침하는 신뢰성 있는 재무 보고서로서의 본연의 기능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6) 보조금 집행잔액에 관한 주요 사항

#### 가) 현황 및 문제점

**일반회계의 보조금 집행잔액**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 회계연도 | 당해예산 | | | | 이월예산 집행잔액 | | | 보조금 집행잔액 (H=D+E+F+G) | 비율 (H/A) |
|---|---|---|---|---|---|---|---|---|---|
| | 보조금 수령액 (A) | 집행액 (B) | 이월액 (C) | 집행잔액 (D=A-B-C) | 명시이월 (E) | 사고이월 (F) | 계속비이월 (G) | | |
| 2025년 | 7,438,300 | 7,287,813 | 124,235 | 26,252 | 2,483 | 3,832 | - | 32,567 | 0.44 |
| 2024년 | 5,605,167 | 5,452,951 | 82,459 | 69,757 | 9,640 | 5,557 | - | 84,954 | 1.51 |
| 2023년 | 5,215,464 | 5,070,988 | 107,899 | 36,576 | 31,240 | 1,257 | 7,518 | 76,591 | 1.46 |
| 2022년 | 5,284,715 | 5,087,710 | 182,090 | 14,915 | 6,803 | 2,386 | - | 24,104 | 0.46 |
| 2021년 | 5,771,974 | 5,535,802 | 229,360 | 6,812 | 10,287 | 1,253 | - | 18,352 | 0.32 |

보조금 집행잔액은 전년도에 비하여 43,505백만원 감소한 26,252백만원으로 그 사유는 당해연도 보조금 수령액이 1,833,133백만원 증가하였으나, 보조금 집행금액 및 이월액 역시 각각 1,834,862백만원 및 41,776백만원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보조금 수령액이 전기 대비 약 32.7% 증가할 동안 보조금 집행잔액은 전기 대비 약 62.4% 감소하면서 보조금 수령액 대비 보조금 집행잔액의 비율이 전기 대비 약 1.07% 감소하였습니다.

**보조금 집행잔액 중 보조금 반환금**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회계연도 | 일반사업 | 명시이월 | 사고이월 | 계속비 | 합계 |
|---|---|---|---|---|---|
| 2025년 | 10,640 | 1,792 | 2,105 | - | 14,537 |
| 2024년 | 49,104 | 8,379 | 4,196 | - | 61,679 |
| 2023년 | 31,528 | 30,207 | 893 | 92 | 62,720 |

당해연도의 반납해야 하는 보조금은 전년도에 비하여 47,142백만원 감소하였습니다.

**보조금 사업 중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반납되는 주요 사업 내역**(미집행액 5억원 이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부 서 | 사 업 명 | 수령액 (국비) | 미집행액 (국비) | 비 율 |
|---|---|---|---|---|
| 경제정책과 | 민생회복 및 지역경제 활력 제고 | 1,790 | 1,162 | 64.9% |
| 장애인복지과 | 최중증 발달장애인 24시간 개별 1:1 지원 | 1,509 | 1,051 | 69.7% |
| 도로계획과 | 황령3터널 건설 | 1,500 | 1,500 | 100.0% |
| 탄소중립정책과 |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보조) | 14,957 | 1,934 | 12.9% |
| 탄소중립정책과 | 전기자동차 구매지원(보조) | 62,574 | 2,546 | 4.1% |
| 해양수도정책과 | STEM 빌리지 조성(보조) | 5,740 | 860 | 15.0% |

## 나) 개선 및 권고사항

당해연도의 집행잔액은 중앙부처에서의 과도한 예산책정, 사업비 증액 및 타당성 재조사로 인한 공사비 반납, 신청자들의 포기 등과 같은 부산시의 귀책이 아닌 건도 존재하나, 일부 사업의 경우 수요 예측의 실패나 첫 사업 시행으로 인해 실제 사업을 이행하는데 있어서 필요한 여건 및 사업 환경을 예측하기가 어려워 집행잔액이 발생한 것으로 보입니다.

과거에 비하여 집행잔액이 크게 감소하는 등 많은 개선이 이루어졌으나, 신규사업의 경우에도 향후 집행잔액이 과도하게 발생하지 않도록 보조금 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를 하는 등 사업의 원활한 집행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합니다.

### 7) 지방보조사업자의 지방보조금통합관리망(보탬e) 기한 내 정산마감

#### 가) 현황 및 문제점

2021년 7월부터 시행된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지방보조금법'이라고 함) 제17조는 지방보조사업의 실적 보고 및 정산에 관하여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때, 지방보조사업 폐지의 승인을 받았을 때,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실적보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이를 심사하여 부적합 시 시정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 법 제17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따라 지방보조금의 총액이 3억원 이상인 지방보조사업자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외부감사법' 이라고 함)에 따른 감사인으로부터 실적보고서의 적정성에 대하여 검증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보조금 집행에 대한 관리의 경우 국고보조금은 보조금통합관리망(e나라도움)을 사용하여 관리함에 따라 실시간 보조금의 집행이 가능하고 잔액 반납에 있어서도 해당 절차를 생략할 수 있는 등 효율적 관리가 가능하며, 지방보조금의 경우 지방보조금법에서 지방보조금통합관리망을 구축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2022년까지 행정안전부 주관(지방자치단체 비용분담 방식)으로 통합관리망 시스템 개발을 추진하였고 2024년부터 지방보조금통합관리망(보탬e)이 본격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2026년 4월 30일 기준 부산광역시 지방보조사업 정산마감 현황 검토 결과 정산마감 비율이 97.8%로 다른 지자체 및 광역시와 비교하여 높고 작년(96.6%) 대비 1.2% 더 높아졌으나, 2026년 2월까지 보탬(e)를 통하여 정산마감을 하지 않고, 정산 미완료된 사업(이월사업 제외)이 일부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단위 : %)

| 구 분 | 권 역 | 정산 마감율 |
|---|---|---|
| 1 | 서울특별시 | 98.4 |
| 2 | 부산광역시 | 97.8 |
| 3 | 대구광역시 | 97.9 |
| 4 | 인천광역시 | 95.4 |
| 5 | 광주광역시 | 97.9 |
| 6 | 대전광역시 | 96.9 |
| 7 | 울산광역시 | 98.5 |
| 8 | 세종특별자치시 | 99.0 |
| 9 | 경기도 | 96.4 |
| 10 | 강원특별자치도 | 95.4 |
| 11 | 충청북도 | 95.7 |
| 12 | 충청남도 | 91.6 |
| 13 | 전북특별자치도 | 96.5 |
| 14 | 전라남도 | 90.0 |
| 15 | 경상북도 | 94.8 |
| 16 | 경상남도 | 95.8 |
| 17 | 제주특별자치도 | 89.3 |
| 합 계 | | 95.0 |

### 나) 개선 및 권고사항

보조사업 담당부서는 지방보조금통합관리망(보탬e)에서 정산마감을 기한 이내에 완료할 수 있도록 관련 사항 확인 등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며, 지방보조사업자들의 지방보조금통합관리망(보탬e)을 통한 원활한 정산마감을 위하여 주기적인 시스템 교육과 보조사업 기간 중 집행내역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 및 지속적인 예산 집행률 관리를 통하여 모든 보조사업이 법률에 명시된 기한 내에 정산마감이 되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 2. 기타특별회계에 관한 사항

## 가. 세입결산에 관한 사항

### 1) 결산액과 잔액증명서의 대사

2025회계연도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결과 세입 2,871,355백만원, 세출 2,781,328백만원, 잉여금은 90,027백만원으로서, 이는 부산광역시 금고 보관 잔액증명서 및 총수입액 및 총 지출액 증명과 일치합니다.

### 2) 기타특별회계별 세입결산

#### 가) 현황 및 문제점

본 회계연도의 **12개 기타특별회계의 세입결산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표1> 세입결산 총괄표

(단위 : 백만원)

| 구 분 | 예산현액 (A) | 징수결정액 (B) | 수 납 액 (C) | 징수비율 (C/A) | 정 리 보 류 액 | 미 수 납 액 |
|---|---|---|---|---|---|---|
| 전년도(①) | 2,712,994 | 2,779,746 | 2,723,821 | 100.40% | 367 | 55,558 |
| 당해연도(②) | 2,831,350 | 2,940,058 | 2,871,355 | 101.41% | 310 | 68,393 |
| 전년도比 (②-①) | 118,356 | 160,312 | 147,534 | 1.01% | △57 | 12,835 |
| 증감률(%) [(②-①)/①*100] | 4.36% | 5.77% | 5.42% | 1.01% | △15.53% | 23.10% |

수납액은 예산현액 대비 101.41%로 전년도 100.40% 대비 1.01% 상승하였으며, 미수납액은 23.1% 증가하였습니다.

미수납액 68,393백만원 중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43,969백만원, 교통사업특별회계 12,628백만원,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9,025백만원, 유료도로특별회계 2,464백만원으로 미수납액의 99.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한편, 〈표2〉의 기타특별회계 세입결산의 추세를 살펴보면, 5년간 계속적으로 세입결산액과 세출결산액이 증가추세를 보였으며 2024년 대비 2025년 세입은 5.42%, 세출은 3.44% 증가하였으며, 순세계잉여금은 102.92% 증가하였습니다.

**<표2>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의 5개년 결산 내역**

(단위 : 백만원)

| 구 분 | | 2025년 | 2024년 | 2023년 | 2022년 | 2021년 |
|---|---|---|---|---|---|---|
| 세 입 | | 2,871,355 | 2,723,821 | 2,709,497 | 2,638,307 | 2,544,443 |
| 세 출 | | 2,781,328 | 2,688,773 | 2,641,901 | 2,508,706 | 2,418,504 |
| 잉여금 | 소 계 | 90,027 | 35,048 | 67,596 | 129,601 | 125,939 |
| | 이 월 금 | 35,064 | 7,375 | 25,796 | 87,520 | 55,953 |
| | 보조금 실제반납금 | 171 | 670 | 234 | 53 | 6 |
| | 순세계잉여금 | 54,792 | 27,003 | 41,566 | 42,028 | 69,980 |

본 회계연도 수납액은 〈표3〉에 보는 바와 같이 전년도보다 147,534백만원 증가한 것은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교통사업특별회계, 원자력발전지역개발특별회계의 수납액은 감소하였으나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 재정비촉진특별회계,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 소방특별회계의 수납액이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또한, 본 회계연도의 수납액은 세입 예산액 2,831,350백만원보다 40,005백만원이 초과 수납되었는데, 회계별로는 12개 기타특별회계 중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등 다수의 회계에서 초과 수납되었기 때문입니다.

본 회계연도 보조금 실제 반납금액은 171백만원으로 전년도 670백만원 대비 499백만원 감소하였습니다.

**<표3> 징수결정액 대비 실제 수납액의 비교**

(단위 : 백만원)

| 구 분 | 예산현액 (전년도 이월액) | 징수 결정액 | 실제 수납액 | 정리 보류액 | 미수납액 | 실제수납액/ 징수결정액 비율 |
|---|---|---|---|---|---|---|
| 2025년 | 2,831,350 (7,375) | 2,940,058 | 2,871,355 | 310 | 68,393 | 97.66% |
| 2024년 | 2,712,994 (25,796) | 2,779,746 | 2,723,821 | 367 | 55,558 | 97.99% |
| 2023년 | 2,698,827 (87,521) | 2,760,449 | 2,709,497 | 375 | 50,577 | 98.15% |
| 2022년 | 2,635,864 (60,752) | 2,683,016 | 2,638,307 | 5,023 | 39,686 | 98.33% |
| 2021년 | 2,547,853 (57,068) | 2,573,581 | 2,544,443 | 276 | 28,862 | 98.87% |

본 회계연도 미수납액이 전년도보다 12,835백만원 증가한 것은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교통사업특별회계,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등의 미수납액이 증가함에 따른 것입니다.

〈표4〉 이월된 미수납액의 연도별 징수실적

(단위 : 백만원)

| 구 분 | 실제 수납액 (가)=(나)+(다) | 현년도 수납액 (나) | 과년도 수납액 (다) | (다)/전년미수납 이월액 비율 |
|---|---|---|---|---|
| 2025년 | 2,871,355 | 2,855,200 | 16,155 | 29.1% |
| 2024년 | 2,723,821 | 2,708,990 | 14,832 | 29.4% |
| 2023년 | 2,709,497 | 2,697,608 | 11,889 | 30.0% |
| 2022년 | 2,638,307 | 2,633,285 | 5,022 | 17.4% |
| 2021년 | 2,544,443 | 2,538,841 | 5,602 | 19.4% |

아래의 〈표5〉는 본 회계연도 미수납액 관리실태로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교통사업특별회계,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에서 95.4%가 발생하였으며, 대부분의 이월 사유는 납세태만과 납기미도래에서 기인하고 있습니다.

〈표5〉 미수납액 관리실태

(단위 : 백만원)

| 기타 특별회계 | 미수납액 | 사유 | | | | | | | | | | |
|---|---|---|---|---|---|---|---|---|---|---|---|---|
| | | 무재산 | 행방불명 | 납세태만 | 폐업부도 | 채무자회생 | 격리입원 | 소송계류 | 국외이주 | 자금압박 | 기타 | 납기미도래 |
| 의료급여기금 | 196 | | | | | | | | | | | 196 |
| 교통사업 | 12,628 | 160 | 62 | 3,622 | 701 | 12 | 4 | 3 | 12 | 7,893 | 90 | 69 |
| 광역교통시설 | 43,969 | | | 14,885 | | | | | | | | 29,084 |
| 유료도로 | 2,464 | | | 2,464 | | | | | | | | |
| 소방 | 111 | 7 | 3 | 54 | 30 | | | 17 | | | | |
| 학교용지부담금 | 9,025 | | | | | | | | | 9,025 | | |
| 합 계 | 68,393 | 167 | 65 | 21,025 | 731 | 12 | 4 | 20 | 12 | 16,918 | 90 | 29,349 |

### 나) 개선 및 권고사항

#### ① 미수납액 관리

미수납액은 세입결산 부분에서 계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항목이고, 과거 결산검사 시에도 꾸준히 지적되어온 사항입니다.

2025회계연도의 미수납액은 <표3>에서 표시하고 있는 바와 같이 2024회계연도에 비해 128억원, 약 23% 증가하였으며, 과거 2023회계연도에 비해 178억원 증가하는 등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회계 단위별로 살펴보면 증가의 주요 원인은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에서 증가한 35억원, 교통사업특별회계 17억원,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68억원이 2025회계연도 미수납액 증가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한편, 〈표5〉 에서 표시되고 있는 바와 같이 미수납액의 사유별로 살펴보면 주로 납세태만과 납기미도래의 사유로 미수납액 잔액이 크게 표시되고 있으며, 미수납액 총액대비 비율은 각각 30.8%, 42.9%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회계단위별로 살펴보면, 납세태만의 사유로 집계되는 미수납액은 주로 교통사업특별회계,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유료도로특별회계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납기미도래로 집계되는 미수납액은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자금압박으로 집계되는 미수납액은 교통사업특별회계와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무재산으로 집계되는 미수납액은 교통사업특별회계입니다.

납기미도래로 집계되는 미수납액의 경우, 관련 법령과 조례에서 규정된 바에 따라 부과 시기가 미도래된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의 미수납액 중 상당부분은 지난연도 수입임에도 불구하고 납기미도래가 존재하며, 납기일의 정확성에

대한 지속적이고 주의깊은 관리가 필요합니다.

또한, 납세태만으로 분류되는 미수납액 중 부과된 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장기성 미수납액이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4,498백만원, 유료도로특별회계 654백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는 미수납액이 발생한 사업의 특성상 체납자의 재산에 대한 압류 등 적극적인 절차가 어려운 상황이고, 교통사업특별회계와 유료도로특별회계의 경우 자동차 등 자산을 압류한 상황이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수납액 회수가 원활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상기 장기성 미수납액에 대하여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에서는 사업의 추진 상황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필요시 압류 등 보다 적극적인 채권 회수 노력과, 교통사업특별회계 및 유료도로특별회계에는 일부 체납 후 도주, 체납고지 후에도 계속적인 미납자 등 악성체납자에 대한 압류재산의 처분, 고발 등 보다 적극적인 미수납액 관리를 권고드립니다.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는 당해연도 미수납액 9,025백만원이 전액 자금압박으로 분류되어 있으며, 본 회계연도 신규 발생 7,749백만원이 추가되었습니다. 또한 과거년도의 과오납에 대한 환급금은 본 회계연도 73백만원이 발생하였으므로, 과오납 환급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합니다.

## 나. 세출 결산에 관한 사항

### 1) 세출결산 총괄사항

#### 가) 현황 및 문제점

본 회계연도 기타특별회계 세출부분의 5년간 결산 추세는 <표1>과 같습니다.

예산현액에 대한 다음연도 이월액과 집행잔액의 비율을 비율 1과 비율 2로 세분화하였습니다.

비율 1은 예비비를 포함한 예산편성과 지출의 합리성 여부를 나타내는 지표로서 차기 이후의 세출예산 편성과 예비비 책정에 반드시 준거되어 활용되어야 하는 수치이며, 비율 2는 다음연도 이월액의 비율입니다.

비율1은 2025년 0.52%로 전년도 0.58% 대비 0.06%p 감소하였고, 비율2는 1.76%로 전년도 0.85% 대비 0.91%p 상승하였습니다. 당해연도의 경우 비율1은 1%를 하회하나 비율2는 다음연도 이월액 증가(7,375백만원→35,064백만원)로 인해 1%를 상회하는 상태입니다. 이는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 등 일부 회계의 명시이월 증가에 기인하므로 사업진척도 점검이 필요합니다.

<표1> 예산현액 대비 이월액 및 집행잔액

(단위 : 백만원)

| 연 도 | 예산현액 (A) | 지출액 | 이월액 (B) | 집행잔액 (C) | 비율 1 (C/A) | 비율 2 (B+C)/A |
|---|---|---|---|---|---|---|
| 2025년 | 2,831,350 | 2,781,328 | 35,064 | 14,787 | 0.52% | 1.76% |
| 2024년 | 2,712,994 | 2,688,773 | 7,375 | 15,700 | 0.6% | 0.9% |
| 2023년 | 2,698,827 | 2,641,901 | 25,796 | 30,778 | 1.1% | 2.1% |
| 2022년 | 2,635,864 | 2,508,705 | 87,521 | 39,454 | 1.5% | 4.8% |
| 2021년 | 2,547,853 | 2,418,504 | 60,753 | 68,067 | 2.7% | 5.1% |

한편 12개의 **각 특별회계별 예산현액 대비 집행잔액 상세 내역**은 <표2>와 같습니다.

**<표2> 기타특별회계 집행잔액 상세 내역**

(단위 : 백만원)

| 구 분 | 집 행 잔 액 | | | | | | |
|---|---|---|---|---|---|---|---|
| | 보조금 정산잔액 | 예산 절감 | 계획 변경 등 | 낙찰 차액 | 지출 잔액 | 예비비 | 합 계 |
| 의료급여기금 | | | | | 1 | 1,701 | 1,701 |
| 교통사업 | | | 205 | 283 | 401 | 810 | 1,699 |
| 광역교통시설 | | | | | 814 | 75 | 888 |
| 도시철도사업 | | | | | 655 | 4,222 | 4,877 |
| 유료도로 | | | | | 0 | 200 | 200 |
| 원자력발전지역개발 | | | | | 69 | 69 | 138 |
| 재정비촉진 | | | | | 12 | 100 | 111 |
| 기반시설부담구역 | | | | | - | 2 | 2 |
| 화력발전지역개발 | | | | | 297 | 25 | 322 |
| 소방 | | | | | 1,726 | 1,176 | 2,902 |
| 학교용지부담금 | | | | | 2 | 118 | 120 |
| 국민주택사업 | 5 | | | 2 | 1,200 | 620 | 1,827 |
| **합 계** | **5** | **-** | **205** | **285** | **5,175** | **9,116** | **14,787** |

<표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집행잔액은 주로 지출 잔액 및 예비비 편성에서 비롯되었습니다.

다만, 당해연도 편성된 예비비는 지방재정법 제43조에 따른 예비비 설치 기준인 1%를 초과하지 않고 있습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및 도시철도사업 특별회계의 예비비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해당 특별회계의 예비비는 전년도에 비하여 일부 감소하였습니다.

<표3> 기타특별회계 예비비 편성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 예산현액 | 예비비 설정 한도(1%) | 예비비 | 초과액 |
|---|---|---|---|---|
| 의료급여기금 | 1,193,692 | 11,937 | 1,701 | - |
| 교통사업 | 92,537 | 925 | 810 | - |
| 광역교통시설 | 13,662 | 137 | 75 | - |
| 도시철도사업 | 861,321 | 8,613 | 4,222 | - |
| 유료도로 | 38,193 | 382 | 200 | - |
| 원자력발전지역개발 | 30,634 | 306 | 69 | - |
| 재정비촉진 | 19,436 | 194 | 100 | - |
| 기반시설부담구역 | 1,062 | 11 | 2 | - |
| 화력발전지역 | 3,878 | 39 | 25 | - |
| 소방 | 468,013 | 4,680 | 1,226 | - |
| 학교용지부담금 | 42,698 | 427 | 118 | - |
| 국민주택사업 | 66,224 | 662 | 620 | - |

2024회계연도 대비 2025회계연도에는 모든 기타특별회계 회계단위에서 예비비 편성액이 지방재정법에서 정하는 범위에 있습니다.

또한, 2024회계연도의 예비비 편성액 10,329백만원이었으나 2025회계연도의 예비비 편성액은 9,168백만원으로 약 9.34%로 전년과 비교하여 감소하였습니다.

또한, 지방재정법 제43조에 따르면 예비비란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항목으로 2025회계연도 예비비 사용액의 세부내역은 소방특별회계 내 APEC 정상회의 개최 지원을 위한 현장활동 지원이며, 이는 사전에 예측이 불가능한 내용이라 판단됩니다.

### 나) 개선 및 권고사항

#### ① 계속비 편성관리

지방재정법 제42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사나 제조, 그 밖의 사업으로서 그 완성에 수년을 요하는 것은 필요한 경비의 총액과 연도별 금액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계속비로서 여러 해에 걸쳐 지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는 완성하기까지 여러 해가 걸리는 공사 중 중단없이 이행하여야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속비로 편성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기 규정에 따라 특별회계의 예산편성 시 장기적이고 계속적으로 이행하여야 하는 사업은 계속비로 편성하여야 함에도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 내 ‘도시철도 하단-녹산선 건설’, 원자력발전지역개발특별회계 내 ‘SMR 보조기기 제작 지원센터 구축’ 소방특별회계 내 ’사상소방서 재건축’ 등의 경우 연도별로 예산을 분할하여 책정하고, 당해연도에 미지출된 예산을 차기 연도로 명시이월, 사고이월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상기와 같은 장기공사계약의 경우 단년도에 집행이 종료될 것으로 예상되는 소규모 공사와 다르게 전체 공사비에 대한 예산관리의 필요성이 있으므로 향후 예산편성 시 특히, 차세대 부산형 급행철도 시스템, 도시철도 정관선 건설 등 장기공사계약이 계속비로 편성될 수 있도록 권고드립니다.

# 3. 기금에 관한 사항

## 1) 기금 활성화 방안 모색

### 가) 현황 및 문제점

2025년 결산 기준 20종(29개 계정)의 기금으로 운용되고 있습니다. 이 중 일부 기금은 2025년 중 사용액이 없었으며, 과거 3년간 조성액 대비 사용액도 매우 낮은 수준 혹은 0%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관련 기금명 및 과거 3년간 조성액 대비 사용액 비율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표1> 과거 3개년간 조성액 대비 사용액 비율

| 기 금 명 | 2025년 | 2024년 | 2023년 |
|---|---|---|---|
| 중소기업육성기금 사회적경제육성계정 | 0% | 0% | 0% |
| 남북교류협력기금 | 0% | 0% | 5% |
| 체육진흥기금 손실보전준비금계정 | 0% | 0% | 0% |
| 관광마이스육성진흥기금 | 0% | 0% | 0% |

그리고 상기 4개 기금 및 재원의 효율적 활용과 재정수입 불균형을 조정하기 위해 설치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제외하고, 사용액 대비 사업비(비융자성 사업비 및 융자성 사업비) 비율이 매우 낮은 수준 혹은 0%를 나타내고 있는 기금이 존재하며 관련 기금명 및 사용액 대비 사업비(비융자성사업비 및 융자성 사업비) 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표2> 기금별 사용액 중 사업비 지출액 비율

(단위 : 백만원)

| 기 금 명 | 사업비 사용액 (A) | | | 사용액 (B) | 사업비 사용액 비율 (A/B) |
|---|---|---|---|---|---|
| | 비융자성 사업비 | 융자성 사업비 | 계 | | |
| 지역개발기금 | 3 | 0 | 3 | 53,829 | 0% |
| 공공시설등설치운영기금 | 0 | 0 | 0 | 5,001 | 0% |

### 나) 개선 및 권고사항

일부 기금에 대해서는 기금의 본래 설치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금이 단순 적립에 그치지 않고 설치 목적에 맞게 실질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각 기금별 사업비 편성 비율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 2) 예산 편성의 정확성 제고

### 가) 현황 및 문제점

폐기물처리시설주변지역주민지원기금의 전년도 미수납액이 당해연도 지난연도 수입으로 예산편성이 되었어야 하나, 타 목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표3> 전년도 미수납액과 다음연도 이월액, 당해연도 예산편성 현황**

(단위 : 백만원)

| 기 금 명 | 2024년 | 2025년 | 2024년 | 2025년 |
|---|---|---|---|---|
| | 미수납액 | 지난연도 수입 | 다음연도 이월액 | 전년도 이월액 |
| 집단에너지시설기금 | 172 | 172 | | |
| 폐기물처리시설주변 지역주민지원기금 | 9 | 0 | | |
| 식품진흥기금 | | | 269 | 269 |
| 재난관리기금 | | | 6,955 | 6,955 |
| 도시및주거환경정비기금 | | | 100 | 100 |
| 체육진흥기금 | | | 21,507 | 21,507 |
| 합 계 | 181 | 172 | 28,831 | 28,831 |

### 나) 개선 및 권고사항

선행연도 데이터의 정확한 반영을 통하여 예산편성 기초를 강화하고 예산집행의 왜곡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따라서 각 부서에서는 예산편성 단계에서 전년도 결산 현황을 충분히 분석하여 보다 정확한 예산을 편성할 것을 권고 드립니다.

# 4. 재무제표에 관한 사항

## 1) 채무관리

### 가) 현황 및 문제점

부산시의 2025년 채무잔액은 2024년 채무잔액 3조1,413억원보다 2,194억원 증가한 3조3,608억원으로 6.99%가량 증가하였습니다. 2025년 채무잔액은 과거 5개년 평균 채무금액인 3조2,052억원보다 1,555억원 높은 수준입니다. 채무 종류로 분류하면 지방채 증권이 전기대비 1,943억원(9.61%) 증가하였습니다. 과거 5개년 채무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표1> 과거5개년 채무현황

(단위 : 억원)

| 채무종류 | 2021년 | 2022년 | 2023년 | 2024년 | 2025년 |
|---|---|---|---|---|---|
| 지방채증권 | 24,496 | 22,966 | 22,185 | 20,218 | 22,161 |
| 차 입 금 | 7,769 | 8,620 | 9,197 | 11,195 | 11,447 |
| 채무부담행위 | 10 | 0 | 0 | 0 | 0 |
| 합 계 | 32,275 | 31,586 | 31,382 | 31,413 | 33,608 |

2025년도에 발생한 채무는 7,377억원이며, 소멸(상환)한 채무는 5,182억원입니다. 2024년 대비 2025년 채무 종류별 증감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표2> 2024년 대비 2025년 채무 종류별 증감 내역

(단위 : 억원)

| 구 분 | 전년도말 현재액 | 당해연도 증감액 | | | 당해연도말 현재액 |
|---|---|---|---|---|---|
| | | 계 | 발생액 | 소멸액 | |
| 지방채증권 | 20,218 | 1,943 | 6,355 | 4,412 | 22,161 |
| 차 입 금 | 11,195 | 252 | 1,022 | 770 | 11,447 |
| 합 계 | 31,413 | 2,195 | 7,377 | 5,182 | 33,608 |

채무증가의 89%가량에 이르는 지방채증권 발행은 만덕~센텀 도시고속화도로 건설 등 도로건설, 도시철도 건설 및 노후차량 개선, 재난 및 재해예방, 오페라하우스 건립, 장기미집행공원 도시계획시설 보상 등의 사업으로 지출되었습니다.

### 나) 개선 및 권고사항

채무잔액은 증가하였으나, 이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재난 및 재해 예방에 따른 주민생활 안정, 미래 성장 기반 조성을 위한 적극재정 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채무 잔액이 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예산규모 증가폭이 채무 증가폭을 상회함에 따라 채무비율 및 관리채무비율은 감소하고 있다는 점에서 채무관리는 적정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관리채무상환비율은 2023년 증가한 이래로 지속적인 관리를 통하여 감소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과거 5개년간 채무비율, 관리채무비율 및 관리채무상환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표3> 과거 5년간 채무비율, 관리채무비율 및 관리채무상환비율**

| 구분 | 2021년 | 2022년 | 2023년 | 2024년 | 2025년 |
|---|---|---|---|---|---|
| 채무비율 | 18.51% | 17.55% | 17.79% | 16.55% | 16.26% |
| 관리채무비율 | 20.96% | 19.80% | 19.96% | 18.80% | 18.22% |
| 관리채무상환비율 | 6.33% | 6.14% | 8.15% | 8.09% | 7.65% |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전략적 재원조달 수단으로 지방채를 활용하되, 과도한 채무는 미래 세대의 재정부담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채무관리계획을 준수하고 채무비율, 관리채무비율 및 관리채무상환비율 등에 대한 지속적인 관찰을 통하여 재정건전성 관리에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 2) 부산시 계류 중인 소송사건에 대한 관리 검토

### 가) 현황 및 문제점

부산시의 민사 및 행정소송과 관련하여 2025년 및 최근 3년간 평균 계류 중인 소송사건 및 종결사건 승패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표1> 2025년 부산시 송무통계**

| 구 분 | 2025년도 종결소송(건수) | | | | 계류중인 소송 (건수) |
|---|---|---|---|---|---|
| | 승 소 | 패 소 | 계 | 승 소 | |
| 민 사 | 130 | 64 | 194 | 67.0% | 170 |
| 행 정 | 41 | 9 | 50 | 82.0% | 56 |
| 계 | 171 | 73 | 244 | 70.1% | 226 |

**<표2> 최근 3년간 부산시 송무통계**

| 구 분 | 최근 3년간 평균 종결소송(건수) | | | | 계류중인 소송 (건수) |
|---|---|---|---|---|---|
| | 승 소 | 패 소 | 계 | 승 소 | |
| 민 사 | 92 | 29 | 121 | 76.0% | 171 |
| 행 정 | 39 | 4 | 43 | 89.9% | 60 |
| 계 | 131 | 33 | 164 | 79.6% | 231 |

소송은 손해배상, 매매대금 등 각기 상이한 사유로 개인 및 일반법인 등이 부산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고 있으며, 최근 3년간 평균 승소율 대비 2025년 승소율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송가액과 패소가 예상되어 부채로 계상한 금액 비율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을 <표3>에서 확인하였습니다. 이는 소송가액이 큰 사건이 계류됨에 따른 일시적 급증으로 판단됩니다.

<표3> 최근 5년간 소송가액 대비 부채계상액 비율

(단위 : 백만원)

| 구분 | 소송가액 | 부채계상액 | 부채비율 |
|---|---|---|---|
| 2021년 | 184,641 | 2,765 | 1% |
| 2022년 | 250,444 | 4,892 | 2% |
| 2023년 | 377,581 | 5,912 | 2% |
| 2024년 | 352,619 | 73,624 | 21% |
| 2025년 | 295,074 | 60,336 | 20% |

## 나) 개선 및 권고사항

부산시가 과거 대비 승소 비율이 낮아지고 있으며, 소송가액이 큰 사건이 계류됨에 따라 패소 시 부담금액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향후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부산시 모든 부서에서는 사전에 소송노출 발생위험에 대한 검토를 수행하여 불필요한 소송노출에 따른 소송비용과 손해배상 등의 예산 지출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행정업무 수행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5. 성과보고서에 관한 사항

## 1) 성과계획의 적정성 및 성과실적의 신뢰성 제고

### 가) 현황 및 문제점

“부산 먼저 미래로 그린스마트 도시 부산”이라는 도시비전 하에 35개 국에서 258개 사업목표, 480개의 성과지표를 가지고 2025년 한 해동안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480개 성과지표 중 407개 성과지표를 달성하였으며, 49개 성과지표는 초과달성, 24개 성과지표는 미달성 하였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예산의 성과계획서 작성기준에 따르면 정책사업 목표를 측정할 수 있는 성과지표를 설정해야 하며, 신뢰성 제고를 위하여 충실한 성과분석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초과달성 혹은 미달성한 성과지표에 대해서는 충분한 원인분석이 수행되어 성과보고서에 반영되었습니다. 하지만 일부 지표는 성과계획의 적정성(성과관리체계 적합성, 성과지표 타당성, 성과지표 측정방법 적합성, 성과지표 목표치 적정성) 및 성과실적의 신뢰성(실적치 정확성, 실적치 측정 타당성, 실적치 환류 적정성, 결산검사결과와 연계성)에 다소 미흡한 부분이 발견되었습니다.

### 나) 개선 및 권고사항

지방재정법 제5조에 따른 성과계획서 및 성과보고서는 부산시의 비전, 시정방침과 방향, 전략목표 설정에 대한 실적을 적절히 평가하여 재정운영계획에 반영할 수 있도록 성과관리체계를 구축하는 역할을 하여야 합니다.

투입 및 통제 중심의 예산 관리에서 벗어나, 예산의 편성, 심의, 집행, 결산의 전 과정을 성과 위주로 운용하려는 성과관리 제도의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 계량화를 통해 성과측정이 불가능한 사업은 과감히 배제하고 정량적 측정이 가능한 예산 사업만 성과관리 대상으로 삼는 방향으로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 6. 공유재산에 관한 사항

## 1) 공유재산 실태조사에 따른 대장 정비 및 관리 체계 개선

### 가) 현황 및 문제점

공유재산은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중요한 유·무형자산으로 재정적 기반이자,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한 공공재입니다. 따라서 체계적이고, 정확한 공유재산 대장 관리가 필요합니다. 2025년의 공유재산 종류별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표1> 종류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 전년도말 현재액 (A) | 증가액 (B) | 감소액 (C) | 당해연도말 현재액 (A+B-C) |
|---|---|---|---|---|
| 계 | 33,898,822 | 1,262,738 | 572,833 | 34,588,727 |
| 토지 | 14,713,531 | 296,255 | 102,096 | 14,907,090 |
| 건물 | 3,636,501 | 323,920 | 33,438 | 3,926,983 |
| 입목죽 | 13,815 | - | - | 13,815 |
| 공작물 | 6,297,770 | 43,903 | 486 | 6,341,187 |
| 기계기구 | 67,769 | - | - | 67,769 |
| 선박 | 21,748 | - | - | 21,748 |
| 항공기 | 41,531 | - | - | 41,531 |
| 무체재산 | 6,777 | 403 | 8 | 7,172 |
| 유가증권 | 6,205,636 | 60,377 | 800 | 6,265,213 |
| 용익물권 | 22,626 | 1,838 | 1,250 | 23,214 |
| 회원권 | - | - | - | - |
| 건설중인재산 | 2,871,118 | 536,042 | 434,755 | 2,972,405 |

<표2> 아래의 사유별 증감 현황

(단위 : 건, 백만원)

| 구 분 | 누락재산등록으로 인한 증가 | | 이중등록으로 인한 감소 | | 입력착오로 인한 감소 | |
|---|---|---|---|---|---|---|
| | 건 | 가액 | 건 | 가액 | 건 | 가액 |
| 계 | 18 | 54,372 | 403 | 1,592 | 31 | 1,331 |
| 토지 | 4 | 7,421 | 1 | 1,061 | 1 | 34 |
| 건물 | 1 | 46,485 | 1 | 511 | 2 | 1,291 |
| 공작물 | 1 | 75 | 401 | 20 | - | - |
| 무체재산 | 12 | 391 | - | - | 28 | 6 |

실태조사를 통해 서면지하도상가 중앙몰(465억원) 및 토지(74억원), 무체재산인 응급환자인식서비스시스템(4억원)의 약 544억 원 규모의 숨은 재산을 발굴하였습니다. 이는 실태조사의 긍정적인 성과이나, 그동안 대규모의 재산이 대장에서 누락되어 과소 계상해 왔음을 보여줍니다.

또한, 최초등록 시 오등재된 사항이 발견되어 공작물 401건, 건물 1건, 토지 1건이 감소 처리되었습니다. 동일 소재지에 자산이 중복 등록된 것은 시스템 입력 단계에서 상호 필터링이나 사전 교차 검증 절차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음을 의미합니다.

아울러, 무체재산 28건의 증감사유 오선택 및 건물 2건의 증축분을 별건 자산으로 오입력하여 감소 처리됨에 따라 실무적인 입력 착오 또한 발견되었습니다.

### 나) 개선 및 권고사항

공유재산 결산부서와 취득부서 간의 시스템상 교차 검증이 이루어지도록 긴밀한 업무 협조 체계를 구축하여야 합니다. 또한, 다빈도 오입력 유형을 중심으로 실무 담당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이 필요합니다.

인적 오류로 인한 동일 소재지 자산 중복 등록을 방지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상의 필터링 기능 개선을 권고드립니다.

# 7. 성인지 결산에 관한 사항

## 1) 성인지 예산 사업 선정 및 성과지표 설정의 적정성 제고

### 가) 현황 및 문제점

성인지 예산제도는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고려하여 예산 편성에 반영·집행하고,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예산의 수혜를 받고 그 집행으로 성별 격차가 해소되었는지 평가하여 다음연도 예산편성에 반영하는 제도입니다. 최근 2년간 지출액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표1> 성인지 예산 사업유형별 집행 현황

(단위 : 건, 백만원, %)

| 구 분 | 2024년 | | 2025년 | | 증 감 | | |
|---|---|---|---|---|---|---|---|
| | 건 | 지출액 | 건 | 지출액 | 건 | 지출액 | 비율 |
| 계 | 187 | 709,638 | 210 | 838,626 | 23 | 128,988 | 18.2 |
| 양성평등정책추진사업 | 57 | 164,270 | 68 | 247,709 | 11 | 83,439 | 50.8 |
| 성별영향평가사업 | 64 | 161,550 | 41 | 25,952 | △23 | △135,598 | △83.9 |
| 지방자치단체특화사업 | 64 | 383,053 | 62 | 501,486 | △2 | 118,433 | 30.9 |
| 기타사업 | 2 | 765 | 39 | 63,479 | 37 | 62,714 | 8,197.9% |

2025년의 성인지 예산의 사업유형별 집행 현황을 살펴보면, 총 210개 사업에 대해 838,626백만원이 집행되었으며, 그 중 양성평등정책추진사업은 68개 사업에 247,709백만원, 성별영향평가사업은 41개 사업에 25,952백만원, 지방자치단체특화사업은 62개 사업에 501,486백만원, 기타 39개 사업에 63,479백만원이 각각 집행되었습니다. 또한 2024년 대비 총 사업 건수는 23건 증가하였고 지출액은 128,988백만원 증가하였습니다.

<표2> 성인지 예산 성과목표 달성 현황

(단위 : 개, %)

| | 성과목표수(A) | 목표달성 지표수(B) | 목표 미달성 지표 | 목표 달성률(B/A) |
|---|---|---|---|---|
| 2025년 | 225 | 184 | 41 | 81.78 |
| 2024년 | 197 | 149 | 48 | 75.63 |

2025년 성과목표 달성 현황을 보면 전체 성과목표 225개 중 184개가 달성되어, 목표달성률은 81.78%입니다. 이는 전년도 달성률인 75.63% 대비 6.15% 상승하였고, 2023년도 이후 목표달성률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표3> 성인지예산 사업 선정기준

| 사업유형 | 사업선정기준 |
|---|---|
| 양성평등정책추진사업 | 여성을 주대상으로 하며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권익증진 등을 도모하거나 여성의 돌봄 부담 등 가족 내 성불평등을 개선할 수 있는 사업 |
| 성별영향평가사업 | 사업수혜에서 성별격차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거나 성평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사업 |
| 지방자치단체특화사업 | 자치단체장 공약 사업 및 주력사업 |
| 기타사업 | 이전 성별영향평가사업, 기타 재원배분을 통해 양성평등 실현에 기여하거나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사업 |

「성인지예산 사업 선정기준」에 따라 성 평등을 개선하는 목표로 사업을 선정해야 하나, 벡스코 시설확충 사업, 해운대수목원 유지관리, 도시 바람길 숲 조성사업 등 대규모 인프라 사업들이 부산 시민 전체를 수혜자로 설정하여 성인지 사업으로 분류되었습니다.

또한, 현재의 성과지표가 성인지 교육 횟수, 성인지 점검표 작성 건수, 행사 모니터링 건수 등으로 단순 행정 이행(Input) 지표로 설정되어 있어 실제 성 평등 개선 효과를 입증하기에는 지표의 타당성이 부족해 보입니다.

특히,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지원(244억원), 도시 바람길숲 조성(73억 원) 등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의 성과를 ‘1회 교육’이나 ‘2개소 조성’보다 예산 규모와 정책 목적에 부합하는 실효성 있는 성과지표 개발 및 적용이 필요합니다.

### 나) 개선 및 권고사항

성인지 예산은 사업 선정 단계부터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성별 격차 해소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대규모 인프라 사업의 경우 그 시설 설계 및 운영 과정에서 성별에 따른 보행 특성이나 범죄예방환경설계와 같은 안전 감수성이 고려되어야 합니다. 또한,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평등 사업의 적극적인 개발이 필요합니다.

사업 대상자와 수혜자가 사업의 목적 및 내용, 투입 예산 규모와의 연결성이 있어야 하며, 사업별 실효성 있는 성과지표 선정 및 검토가 필요합니다. 성별 격차 해소라는 결과(Outcome)를 보여줄 수 있는 합리적이고 타당성 있는 다양한 지표 선정을 권고드립니다.

## 2) 성인지 예산 성과목표치에 대한 개선 필요

### 가) 현황 및 문제점

당해연도 성과목표치는 전년도 실적치 또는 수요조사를 바탕으로 설정되어야 하나, 예산 편성 시기와 결산 시기의 차이로 인하여 성과목표치를 과소 또는 과대 설정하여 사업 성과로 왜곡되어 나타나거나 예산집행의 환류 기능을 저해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표1> 24년 실적치 대비 목표치를 과소하게 설정

| 구 분 | 회계 연도 | 성과목표 | 24년 실적치 | 25년 목표치 | 25년 실적치 |
|---|---|---|---|---|---|
| 부산형 자치경찰 정책개발(일반회계) | 2025 | 주민참여형 반려견순찰대 순찰활동으로 지역치안 안전도 향상 (반려견순찰대 방범활동 건수) | 8,883건 | 2,000건 | 13,514건 |
| 성매매 피해자 구조지원 (일반회계) | 2025 | 성매매피해여성의 구조 및 자활지원 강화 (성매매피해자 구조지원 실적) | 5,131건 | 3,498건 | 4,332건 |
| 양성평등사업 지원 | 2025 | 사업 참여자 만족도 제고 (참여자 만족도) | 94.3% | 40% | 95.4% |
| 건강가정 및 가족센터 운영(지원) (일반회계) | 2025 | 다양한 가족 지원 확대 및 건강한 가족기능 강화 (성평등 인식개선 교육·홍보 횟수) | 99회 | 60회 | 101회 |
| 항만물류 전문인력양성사업 (국가직접지원) (일반회계) | 2025 | 양성평등한 해기사 인력 양성 (남성 신청자 대비 남성 합격자 비율) | 85% | 45% | 94% |
| | | 양성평등한 해기사 인력 양성 (여성 신청자 대비 여성 합격자 비율) | 100% | 40% | 100% |

### 나) 개선 및 권고사항

성인지 예산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전년도 실적 또는 수요 분석에 근거한 목표치를 설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사업의 집행 성과를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도록 성과지표 체계가 개선되어야 합니다. 무엇보다 전년도 달성 실적을 하회하는 소극적 목표 설정을 지양하고, 예산 규모에 부합하는 도전적인 목표를 수립함으로써 실질적인 정책 개선을 유도해야 합니다.

아울러 전년도 결산의 사후 확정이나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따른 예산 변동 등 현실적인 행정 여건을 반영하여, 기설정된 목표치와 현격한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 성인지 예산서를 경정 반영할 수 있도록 운영의 유연성을 제고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을 권고드립니다.